제2부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2012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 제1장 개요
-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
- 제3장 제3기 양형기준 마련
- 제4장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제5장 제3기 4개범죄 양형기준안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 제6장 공청회 개최
- 제7장 자문위원 회의 개최
- 제8장 전문위원 연구
- 제9장 양형기준 운영점검 및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 제10장 양형자료 통계분석 지원
- 제11장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 제12장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제1장 개요

I 양형기준 설정

2011. 4. 27.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양형기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2011. 6. 14.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선정한 후,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양형기준안 작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2012. 1. 30. 증권 · 금융,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2012. 3. 5.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 6차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2012. 6. 18.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2012. 6. 28.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2.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12. 6. 18.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제7차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 8. 20.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의결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8. 29.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2. 9.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2012. 12. 17.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제8차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3. 2. 4.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의결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은 2013. 2. 22.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II 양형기준 수정

위원회는 2011. 10. 24. 제5차 임시회의에서 장애인 ·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수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2. 1. 30. 제39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위 양형기준은 2012. 2. 10.자 관보에 게재되었고, 개정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인 2012. 3. 16.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아가 위원회는 살인범죄 일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그것에 비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2013. 6. 19. 시행 예정인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등 성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3. 3. 25.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3. 4. 22. 제48차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2013. 5. 15.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부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6. 19.부터 각 시행되고 있다.

III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

운영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운영규정 제21조).

운영지원단은 양형기준 적용으로 인한 효과, 양형기준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2. 1. 1. ~ 2012. 12. 31.까지 판결선고된 제1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과 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2. 1. 1. ~ 2012. 12. 31.까지 판결선고된 제2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그리고 제3기 양형기준 중 2012년에 의결되어 시행된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2012. 7. 1. 이후 공소제기되어 2012. 12. 31.까지 판결선고된 사건)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2012. 9. 1.이후 공소제기되어 2012. 12. 31.까지 판결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2013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2부 제12장에 수록하였다.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

I 위원회 회의

양형위원회는 회의체 조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법 제81조의5, 규칙 제5조 제1항).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별로 2회씩 연간 8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운영규정 제2조).

1 회의일정

(2013. 4. 26. 기준)

차수	일시	안건
41차	12. 5. 7.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 심의
42차	12. 6. 18.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43차	12. 8. 20.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
44차	12. 10. 26.	● 조세,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45차	12. 12. 17.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46차	13. 2. 4.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결과 심의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
47차	13. 3. 25.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48차	13. 4. 22.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주요 회의 결과

가. 제41차 회의

(1) 회의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교통범죄 및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 6차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식 개최 보고
- 2012년도 제1차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개최 보고
-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완료 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교통범죄 및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각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운영지원단으로부터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 6차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나. 제42차 회의

(1) 회의안건

▸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보고
-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보고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기존의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더불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였다.

다. 제43차 회의

(1) 회의안건

▶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보고
-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양형기준 관보 게재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양형위원,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2012년도 제2차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개최
- 2012 양형기준 책자 발간 보고
-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고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라. 제44차 회의

(1) 회의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조세범죄 및 공갈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2011 연간보고서 발간 보고
- 국정감사 보고
-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 양형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보고
-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보고
- 양형기준 관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고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조세 및 공갈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 제45차 회의

(1) 회의안건

▶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미합의 쟁점 심의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조세,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양형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201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201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제46차 회의

(1) 회의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의를 거쳐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또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사. 제47차 회의

(1) 회의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양형기준 관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201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아. 제48차 회의

(1) 회의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검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또한 제3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2013. 4. 26. 종료함에 따라 그동안의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를 검토한 후, 향후 양형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Ⅱ 소위원회 회의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3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5.부터 2013. 4.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1 회의일정

(2013. 4. 26. 기준)

차 수	일 시	안 건
21차	12. 5. 30.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2차	12. 8. 13.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23차	12. 12. 10.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 주요 회의 결과

가. 제21차 회의

(1) 회의안건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 회의요지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나. 제22차 회의

(1) 회의안건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2) 회의요지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난 소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다. 제23차 회의

(1) 회의안건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2) 회의요지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중 전문위원단 논의 결과 미합의 쟁점으로 남은 사항에 대하여 쟁점별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III 전문위원 회의

전문위원 전체회의 일정 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54차	12. 4. 30.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 논의사항 • 선거범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방안 확정 • 선거범죄 양형인자 설정방안 - 제출자료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III)(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55차	12. 5. 21.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 논의사항 •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가 검토 - 제출자료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IV)(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제출자료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폭력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의견조회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56차	12. 6. 4.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 논의사항 • 선거범죄 양형인자 관련 추가 검토 - 제출자료 •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증권 · 금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 논의사항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 제출자료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폭력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57차	12. 7. 30.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함석천, 최형표 전문위원)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선거범죄군(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58차	12. 9. 10.	● 조세범죄 및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논의사항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 조세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 • 공갈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위 및 유형분류,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Ⅰ)(최형표 전문위원) • 관세범죄 설정 여부 적정성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공갈, 조세,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인자 검토(Ⅰ)(조석영 전문위원)
59차	12. 10. 8.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논의사항 • 조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Ⅱ)(최형표 전문위원)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Ⅱ)(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논의사항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II)(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60차	12. 10. 22.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논의사항 • 권고 형량범위 상향 여부, 양형인자 수정 여부 - 제출자료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조세범죄,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논의사항 •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III)(최형표 전문위원)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III)(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III)(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61차	12. 11. 12.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논의사항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대상범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IV)(최형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I)(최형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II)(최형표 전문위원)
62차	12. 11. 26.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논의사항 • 조세범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 공갈범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 방화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Ⅴ)(최형표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Ⅱ)(최형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Ⅲ)(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63차	12. 12. 3.	● 조세,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논의사항 •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감경인자 설정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양형인자 • 방화범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Ⅵ)(최형표 전문위원) •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이중교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Ⅲ)(최형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Ⅳ)(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64차	13. 1. 28.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최형표 전문위원) • 공청회 · 관계기관 의견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검토 - 제출자료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수석 전문위원)
65차	13. 3. 4.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논의사항 • 살인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의 정의,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수정, 양형인자 • 성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최승원 전문위원) • 살인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함석천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한 의견(김혜정 전문위원)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66차	13. 3. 18.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 논의사항 • 살인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 • 성범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수정 방안,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 제출자료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II)(최승원 전문위원)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함석천 전문위원) • 성범죄 수정 시안에 대한 검토 보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김혜정 전문위원)
67차	13. 4. 15.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논의사항 • 살인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 형량범위 특별조정에 관한 설명 • 성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 제출자료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최승원 전문위원)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III)(최승원 전문위원)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함석천 전문위원)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함석천 전문위원) • 제67차 전문위원단 회의 자료-성범죄(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 이광수, 이상원 위원 요청자료 제출-살인범죄, 성범죄 관련 통계(전문위원단)

| 전문위원 제64차 전체회의(2013. 1. 28.) |

제3장 제3기 양형기준 마련

I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제3기 위원회는 2011. 6. 14. 제35차 회의에서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된 주요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증권 · 금융범죄 :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로서, 금융 · 경제 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 증가
- 지식재산권범죄 : 현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
- 폭력(상해, 폭행, 협박)범죄 : 사건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
- 교통범죄 : 사건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
- 선거범죄 :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당선의 유 · 무효와 관련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
- 조세범죄 : 화이트칼라범죄로서 국가 존립의 근간인 조세과징권 및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 공갈범죄 : 재산범죄이자 자유침해범죄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는 범죄로서, 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완결의 의미를 갖는 범죄
- 방화범죄 : 공공위험죄이자 재산범죄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는 범죄로서 연쇄방화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

II 제3기 양형기준 설정 경과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 전문위원 과제 분장
- 1팀 :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공갈범죄군
- 2팀 : 증권 · 금융, 교통, 조세, 방화범죄군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자료조사(2011. 8. 8. ~ 9. 9.)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자료조사(2012. 2. 27. ~ 4. 13.)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증권 · 금융,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1. 30.)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3. 5.)
- 증권 · 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2012. 3. 12.)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2012. 3. 26.)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3. 6. ~ 4. 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6. 18.)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2012. 7. 16.)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6. 20. ~ 7. 20.)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2012. 6. 18.) 및 시행(2012. 7. 1.)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2012. 8. 20.) 및 시행(2012. 9. 1.)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2. 12. 17.)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2013. 1. 21.)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012. 12. 18. ~ 2013. 1. 18.)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2013. 2. 4.) 및 시행(2013. 7. 1.)

III 제3기 양형기준 설정 효과

▶ 제3기 양형기준 설정으로 전체 구공판사건 중 약 78%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완료

▶ 제1, 2, 3기 양형기준 설정 현황(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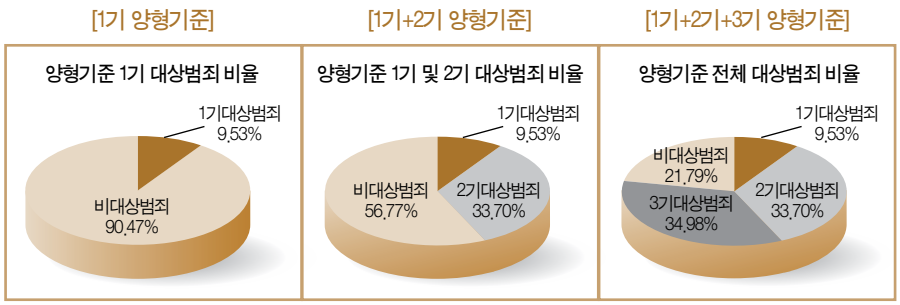

누적비율 : 9.5% 누적비율 : 43.2% 누적비율 : 78.2%

IV 제3기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증권 · 금융범죄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증재행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증권범죄와 금융범죄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다시 증권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금융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로 행위형태를 기준으로 세유형을 분류

나. 지식재산권범죄

- 최근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범죄에 관련된 소송사건과 대기업간의 특허소송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범죄로서,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대유형을 분류
- 등록권리침해행위에는 특허권 ·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 전용실시권, 디자인권 · 전용실시권, 상표권 · 전용사용권 침해가 포함되고, 저작권침해행위를 저작재산권침해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행위(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방해행위, 침해간

주행위 포함)로 세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국내침해 및 국외침해로 세유형을 분류

다. 폭력범죄(상해, 폭행, 협박)

- 상해범죄의 경우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사법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폭행 및 협박범죄의 경우 구공판사건 비율은 높지 않으나 신체 불가침성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폭력범죄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양형기준을 마련
- 일반적인 상해,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로 대유형을 분류한 후 일반적인 상해는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복목적 상해로,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는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와 상습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로, 폭행범죄는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으로, 협박범죄는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으로 세유형을 분류

라. 교통범죄

- 가벌성이 높은 형법 및 특별법상 교통형사범, 즉 협의의 교통범죄(대인 교통사고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유형을 분류한 후,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치상과 교통사고 치사로, 교통사고 후 도주는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로 세유형 분류

마. 선거범죄

- 법률 규정,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 설정
-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허

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으로 유형 분류

바. 조세범죄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범죄발생빈도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세범죄 유형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
- 행위유형에 따라 조세포탈 유형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조세포탈 유형은 일반 조세포탈과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분류한 후 다시 각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에 따라 세유형을 분류

사. 공갈범죄

- 재산범죄이자 자유침해범죄라는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재산권의 침해 정도(이득액) 및 행위자 특성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 일반공갈과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일반공갈을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세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을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과 상습특수공갈 · 누범특수공갈로 세유형을 분류

아. 방화범죄

- 공공위험죄이자 재산범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죄발생빈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
- 결과적 가중범 유무에 따라 일반적 기준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로 유형을 분류하고, 문화재방화와 산림방화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형량범위 설정

제4장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Ⅰ 개요

위원회는 2013. 2. 4. 제46차 회의에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으로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검토' 와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검토' 를 의결함으로써, 살인범죄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여론을 반영하고, 2013. 6. 19.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단은 2013. 3. 4., 2013. 3. 18. 두 차례의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위원회는 2013. 3. 25. 제4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하여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의결된 수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2013. 3. 26. ~ 4. 10.)를 거쳤고,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3. 4. 22. 제48차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의결된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부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다.

Ⅱ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1 추진 경과

(1)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3. 3. 25.)

▸ 위원회는 제47차 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상향 조정,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 수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일부 수정,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의 의미규정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의견수렴 절차(2013. 3. 26. ~ 4. 10.)

▸ 위원회는 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2013. 3. 26.부터 2013. 4.

10.까지 국회 등 33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그 회신을 검토하여 이를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3)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2013. 4. 22.) 및 시행(2013. 5. 15.)

- 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한 차례의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를 논의하였고, 2013. 4. 22. 제4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위 논의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 의결된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 이후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이 성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다. 다만,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권고형량을 상향하였다.

(2)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 수정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만이 명시되어 있던 기존의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의 정의' 부분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을 예시로 추가하였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에서 귀책사유의 예시로 규정된 '스토킹' 부분에 관하여,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도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예시규정에서 삭제하였다.

(3) 그 밖의 주요 내용

-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 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하였다.

- 살인미수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에서 치료기간 부분을 삭제하였다.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하였다.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유형의 정의' 부분에 개정 형법에 의해 신설된 '유사강간살인죄'를 추가하였다.
- 양형인자 중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의 정의를 개정 형법(2013. 4. 5. 시행)의 약취·유인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기존의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를 삭제하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 종전기준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수정 양형기준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I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1 추진 경과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3. 3. 25.)

▸ 위원회는 제47차 회의에서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조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설정 및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의견수렴 절차(2013. 3. 26. ~ 4. 10.)

▸ 위원회는 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2013. 3. 26.부터 2013. 4. 10.까지 국회 등 33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그 회신을 검토하여 이를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3)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2013. 4. 22.) 및 시행(2013. 6. 19.)

▸ 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한 차례의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를 논의하였고, 2013. 4. 22. 제4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위 논의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 의결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6. 19. 이후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임에도 그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기본영역이 법정형 하한의 경계에 있거나 그에 못 미치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범행의 흉포성 및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 범죄들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하였다.

▶ 강도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수정 양형기준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특수강도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수정 양형기준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상향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하한을 일부 상향하였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3)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의 양형인자 삭제

▸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 및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감경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

▸ 형법상 신설된 죄의 권고형량 설정

- 성년 유사강간(신설)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에 포섭하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 영역 : 1년 - 2년], [기본 영역 : 1년 8월 - 3년 4월], [가중 영역 : 2년 8월 - 4년 8월]
-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신설)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에 포섭하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 영역 : 1년 - 2년], [기본 영역 : 1년 8월 - 3년 4월], [가중 영역 : 2년 8월 - 4년]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강화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수정

-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상향)
  - 청소년 유사강간의 경우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성년자 대상 유사강간과 구분없이 '강제유사성교' 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이를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으로 이동시키면서 권고 형량범위 상향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수정 양형기준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향)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하는 것은 기존 양형기준과 동일하나, 서술식 기준의 형량범위 감경비율을 종전 '1/2' 에서 '2/3' 로 수정하는 것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향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8월 - 1년6월	1년3월 - 2년6월	2년 - 3년6월
수정 양형기준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 신설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 · 치상"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치상/상해(상향)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수정 양형기준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치상/상해(상향)

	감경	기본	가중
종전기준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수정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양형위원회 제47차 정기회의(2013. 3. 25.) |

제5장 제3기 4개범죄 양형기준안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I 개요

위원회는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4개범죄(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다.

II 의견조회 대상 기준안

위원회 제42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7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제45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8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그리고 제47차 회의에서 의결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III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대상 기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부, 법제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선거학회, 한국선거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 등 28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2 시행 내역

가. 조회 기간

▸ 2012. 6. 20. ~ 7. 20.

나. 의견 회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법무사협회 등 8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3 양형기준안 회신의견 종합

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분이 모호함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로 규율되고 있고, '소극 가담' 은 일반양형인자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이라는 감경요소를 적시하고 있는 바, '우연한 기회' 라는 것은 심히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우연한 기회' 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의심스러움. 이러한 양형인자가 나중에 선거범 재판에서 여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농아자' 를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자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
- 농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선거범죄에서 농아자인 경우를 감경해야 할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에서 감경요소인 '상대방이 소수 또는 전파성이 낮은 경우' 와 가중요소인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의 명확한 기준 필요

-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수에 의해 다수에게 퍼질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가중요소의 경우에도 다수 또는 전파성이 높은지 여부도 상대적인 문제로 보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대하여 편파적일 수도 있음

나. 대법원

(1)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선거범죄 중 대표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등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위 유형의 범죄를 3 내지 5 유형의 범죄로 세분하여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의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은 타당해 보임

▶ 선거범죄는 그 범죄 태양이 복잡 · 다양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 빈번하여 구성요건의 유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시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은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조문 체계와 법정형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유형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유형 구분이 너무 세분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기준안은 유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기계적인 유형 구분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 특히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제3유형은 징역형이 7년 이하이고, 제4유형도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징역인데, 다만 지시 · 권유 · 요구 · 알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그 구성요건이 상이할 뿐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제4유형을 제3유형과 구별하여 가중된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 같은 유형구간으로 묶거나 설사 제시된 기준안과 같이 유형을 구분하더라도 형량은 지금과 같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2)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기본적 형량범위 설정 방식

-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반드시 명확할 수 없고, 단지 개수로 평가될 수 없는 양형인자의 질적인 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형량범위를 중첩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의 중첩 구간을 둔 것은 적절함

▶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당선 유무효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벌금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양형기준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일부 형량범위 구간의 경우 오로지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실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확보하는 데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예컨대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경우 제1 내지 5 유형에 있어 각 유형별로 오로지 감경영역에서만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감경인자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 등에 근거하여 통계분석상 나타나는 종전 양형실무상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설정방식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선거범죄 관련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의 중점은 형량이 일률적으로 너무 낮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엄정한 양형기준의 수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그로 인하여 양형의 적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 차별화가 필요
  - 제시된 기준안은 '후보자비방'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구별하여 유형구분을 한 다음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그 형량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적극적 의견 표명은 흔히 비방적 성향을

띤 공격을 동반하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민주적인 선거에 있어 불가피하며,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그러한 공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시된 기준안과 같이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함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으로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보다 오히려 높은데도, 제시된 기준안에 따르면 형량이 역전되어 있음

(3)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선거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양형인자의 차별화 내지 평가가 좀 더 검토될 필요도 있어 보임

- 선거조직 내 지위(핵심적 참모의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실행행위자인지, 아니면 우연히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에 따른 영역의 구분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판과정에서 선거범죄는 피고인(내부자)의 적극적 진술이 없이는 실체의 규명이 난해하므로,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기초로 자신의 범행과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 을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자요소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특별양형인자 중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 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이 '개개인에게 제공된 액수' 인지 '총액'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공선법이 기부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에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 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판결)임

-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규정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판결),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문화 풍토의 현실상 공선법 제113조에 위반한 기부행위로 인하여 실제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부행위의 시점과 선거일과의 근접성 여부' 및 '제공, 기부된 금품의 다과 여부' 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행위에 대한 죄질 및 양형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에서 기부행위금지 · 제한위반 유형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ㅇ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ㅇ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위 유형의 감경요소로 ㅇ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만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기부행위 시점이 선거일과 시간적 차이가 큰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기부행위와 선거일의 간격이 매우 커서 사실상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 내지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 를 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관련

- 특별양형인자로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하였는데, 그것을 가중요소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위와 같은 선거관계인이 관여되지 않은 기부행위가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위 가중요소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지휘자와 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위 사항을 모두 가중요소로 할 경우 기부행위는 웬만하면 모두 가중요소가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가중요소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매우 어려워 보임)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가중요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적절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를 가중요소로 보더라도 '일반 양형인자' 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의 유형과 같이 상대방의 해명이나 반론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특별양형인자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비교 필요)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소극 가담' 만이 일반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이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범죄유형의 경우에도 위 인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관련

- 위 양형인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합범에 해당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를 개별 행위마다 적용하여 가중형량범위로 처리한 다음 다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형량을 가중한다면 동일한 양형인자의 이중 평가 문제가 대두될 우려는 없는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의견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이와 같은 특별규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또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등을 말함

다. 법무부

(1)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모든 범죄유형에 있어 가중 구간의 상한(선고형의 상한)이 법정형의 상한에 미치지 못함

- 가중적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상한에는 미치지 못함
- 선거범죄는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사이에도 죄질, 규모,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기준상으로도 법정형 상한 선고 가능

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가중적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1/2 가중하고 있는바, 하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가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가중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가중적 형량범위의 하한도 1/2 가중 필요

(2)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다액인)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낮은) 경우',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등 핵심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화 필요

- 현행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금품선거사범의 금액(10개 구간으로 구분), 흑색선전사범의 선전물 수량 또는 게시 횟수(7개 구간으로 구분), 선거일 임박정도(1년 이전 행위, 6개월 이전 행위/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일 전 5일 이내) 등 각 범죄유형별 특징적 양형인자를 수치화하고 가중·감경 정도가 특정되어 있음

▶ 매수 및 이해유도 또는 기부행위 등과 같은 금품선거범죄에 있어서의 수수금액과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범죄에 있어서의 전파성은 결정적 양형인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성 있음

- 극히 경미한 금액 등 금액 기준에 있어 물가지표와 연동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전파성에 있어 선거인 대비 전파 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도 관점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기준으로서의 의미 퇴색

▶ 기부행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물, 교통편의 등 금전 이외의 물품이나 향응·편의제공 사례에 관해 현금, 유가증권 등 제공사례에 비해 감경요소로 보거나, '극히 경미한(다액인) 경우' 판단의 기준을 달리할 것인지도 검토 필요

(3)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에 대해서도 당선무효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등 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공공성이 강하

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과 개전의 정상만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 선거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는 자칫 재판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

▶ 따라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사유나 기준도 마련함이 상당

라. 대한변호사협회

(1) 선거범죄 양형기준 일반에 관한 의견

▶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종 선택 기준 필요

-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경우와 달리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선거범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양형기준과 달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정하면서 형종 선택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문제임
- 물론 지금까지의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실무가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이 매우 낮아서 종래의 양형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종선택 기준을 수립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 수립하는 양형기준은 종래의 양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험적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앞으로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범적 측면에서의 양형기준 수립이 요청됨

▶ 당선무효의 형은 기본구간에 두는 것이 타당

- 양형구간의 획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에는 감경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양형구간을 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선거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선무효 여부이고 그 다음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종 선택 문제라고 한다면, 선거범죄의 기본양형구간에 당선무효의 형이 위치하도록 하고 가중영역에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종 선택구간이, 감경구간에는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양형구간이 분포하도

록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

▶ 양형기준의 감경, 기본, 가중영역에 법정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경우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5년 이하의 징역)에 국한되고, 나머지 유형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선택형으로 되어 있음에도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벌금형만 두거나 징역형만 두는 경우가 많아 법정형의 의도가 몰각
- 예컨대 '매수 및 이해유도' 의 유형에서 감경형은 벌금형이 가능하고 기본형과 가중형에 벌금형이 불가하여 법정형을 무시하고 있고 기본형에 벌금형을 선택해야 감경형에서 벌금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기본형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감경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 발생
- 기본형과 가중형에도 벌금형을 두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법정형의 취지에 부합하고 양형인자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양형기준을 높이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정한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 에 따른 특별감경요소와 특별가중요소의 균형 필요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본다면, '극히 다액' 인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경미' 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보는 것이 균형에 맞음. 만일 양형기준안에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 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액' 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여야 양형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됨
  - 현재의 양형기준은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고, '경미' 한 경우는 아예 양형인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는 반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 인 경우는 그 다액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여 양형요소 사이에 균형 상실
  -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면 1)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 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는 현재의 입장

을 유지하면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경미' 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취급하도록 수정하거나, 2) 반대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유지하면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 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취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

- 특별감경인자인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에서 '실비보상' 이나 '위로적 차원' 이라는 제한을 삭제함이 타당
  -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의 하나로 거시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는 전후 모순된 양형요소를 하나의 양형요소로 거시함으로써 사실상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는 양형기준안에 비추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는 그 '경미함' 자체로 감경요소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지 그 경미함에 더하여 실비보상이나 위로적 차원이라는 제한을 부가할 이유가 없음
  - 선거관련 '매수죄' 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 대가로 수수하는 금액이 실비보상 차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라야 '매수' 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실비보상 차원의 경미한 금액에 그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로적 차원에서 건네는 금품 역시 경미한 금액에 그치는 경우를 상정하기 불가능
  - 이와 달리 단지 '경미' 한 금품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금품이 '다액' 인 경우가 가중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그 자체로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함
  - 그런데 경미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위와 같이 '실비보상이나 위로적 차원' 이라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부가하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한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사실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이미 감경요소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이라는 제한을 별도로 부가하여 이중적으로

실익을 줄 필요가 없고, 별도의 감경요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를 일반화하여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만으로 획정하여 양형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동종 전과 없음' 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 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 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의 균형상 '동종 전과 없음' 을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중요소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는 특별가중요소, '10년 이내의 이종 누범의 경우' 에는 일반가중요소로 취급하는 반면, 감경요소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이 감경요소로 고려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함
  -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되는 것과의 균형상 '동종 전과' 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하는 방안도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는 그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경고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비난을 가하여야 할 범죄행위로 보임
- 특별가중요소인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에 대한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는 삭제함이 타당
  - 매수 또는 이해유도를 위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선거범죄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다액에 달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사회통념상 상당한 다액의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요소로 보임

- 그렇다면 양형기준안에서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란 단지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 로 예시하면 족하고 제한적 설명문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 에 따른 특별감경요소와 특별가중요소의 균형 필요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본다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다액' 인 경우가 특별가중인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양형기준안과 같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 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한다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경미' 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취급(균형상으로는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적어도 일반감경인자로라도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 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 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 없음' 을 특별감경요소 내지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거나 '동종 전과' 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동종 전과 없음' 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 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 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 없음' 을 특별감경요소 내지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거나 '동종 전과' 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는 추상적이고 다른 양형

요소와 중첩될 여지가 있어 수정함이 타당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죄의 특별가중요소로 들어가 있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비록 설명문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다란 요소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여타 특별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 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섭시키는 방법으로 특별가중요소를 수정함이 타당
- 다른 특별가중요소 중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실제에 있어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와 중첩될 여지 있음
- 이러한 중첩적인 양형요소들을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가중요소 그것도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경우에는 거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양형만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그러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양형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와 중첩될 수 있는 다른 독립한 양형요소들을 이에 흡수시켜 하나의 양형요소로 체계화하고 해당 양형요소는 설명문에 예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를 다른 양형요소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일반가중요소가 아닌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3)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주요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제공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금품제공죄(같은조 제2항),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죄(같은조 제3항)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면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 규정되어 있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3조)' 를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

▶ 금품이나 이익의 다액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한다면 '경미함' 만을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극히' 경미한 경우나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이라는 부가적 요소는 삭제함이 타당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기본형량 구간을 '- 8월, 50만 원 - 300만 원' 에서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으로 상향조정 필요
  - 최근 당내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매수행위라는 본질은 당내경선이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일반매수죄와 동일하게 처벌 필요

▶ '4.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관련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기본형량 구간을 '70만 원 - 200만 원' 에서 '- 6월, 70만 원 - 200만 원' 으로 상향조정 필요
  - 제2유형에는 단순한 선거운동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죄질이 나쁜 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이 필요함
- 불법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 · 운영 유형 신설
  -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 운영은 범죄자체가 조직적이고 규모도 크며 다른 범죄도 다수 수반하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처벌기준 대폭 강화 필요
  -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죄' 에 대한 권고기준 준용하여 형종 및 형량 권고기준 별도 제시 필요

(2)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관련

- 일반양형인자의 행위 가중요소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은 후보자 등의 범행을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보

다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함이 타당

-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진실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를 추가함이 타당
  - 선거에 출마한 자는 자신을 공공의 비판대 위에 세운 것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한 자유의 보장이 필요

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1)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행위는 일반 매수행위 수준으로 강화함이 타당

-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정당정치 또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전제되는 것이며, 큰 틀에서 볼 때 당내경선 역시 공직선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의 중요성,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또한, 당내경선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관련 매수를 일반 매수와 차별화하기 보다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양형기준을 일반 매수의 양형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형량은 적절함

-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상대방 후보와의 정책경쟁, 후보자의 자질검증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그와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후보자비방임
-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부당히 강화한다면,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그 결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중 제2, 3유형의 형량 강화 필요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당선' 또는 '낙선' 이라는 목적의식과 공표하는 사실의 '허위성' 을 고려하였을 때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로 인하여 선거가 혼탁하게 되고,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수없이 있어 왔음
- 국민의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선거에서 부당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엄벌이 필요

▶ '4.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유형 관련

- 벌금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형성되었는데,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이번 기준안은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되, 형의 가중요소가 존재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에 대한 재고 필요

- 당내경선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국민 주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당내경선에 대하여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보다 약한 유형인 제1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음
- 당내경선도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

(2)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2.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의 특별감경요소 중 행위인자인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 의례적 행위'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행위'는 일반양형인자로 포섭함이 타당

- 관행이라는 이유가 하나의 묵인된 용서로 오해된다면 현재 선거에 배어 있는 구태의 청산은 요원할 것임

- 물론, 복잡다기한 정치적 활동의 불가피성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양 관점을 절충하는 선에서 당해 양형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기보다는 일반양형인자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의 특별감경요소 중 행위인자인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는 일반감경인자로 포섭함이 타당

- 당내경선 또한 국민주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에서의 불법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일반감경인자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

▶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의 일반가중인자 중 행위자/기타인자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위원회 제42차 회의 자료집에서는 후보자측의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 신뢰가 낮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일반가중인자' 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거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자로 선량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후보자의 책임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도 후보자 측의 범행에 대하여 특별가중양형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3) 기타 의견

▶ 사위 선거인 명부 등재 · 허위 부재자 신고 · 허위 서명 날인, 사위 방법 투표, 투표수 증감죄는 선거관련 중대범죄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아. 대한법무사협회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

IV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대상 기관

가.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대법원, 대한범죄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부, 법제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조세심판원, 참여연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 등 34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나.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원, 대한범죄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부, 법제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 등 25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다.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원, 대한범죄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행정안전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법재판

소 등 27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2 시행 내역

가. 조회 기간

▶ 2012. 12. 18. ~ 2013. 1. 18.

나. 의견 회신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6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4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3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3 양형기준안별 회신의견 종합

가.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1) 대법원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조세범죄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조세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형기준 제시에 적극 찬성함
- 일반 조세포탈 범죄의 3유형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의 1유형 사이,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3유형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2유형 사이에서는 권고형량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권고형량이 일부라도 겹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액수만 따지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동일하고 객관적 양형조건의 핵심이 액수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고, 검사가 결정하는 적용법조만으로 권고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적당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권고형량을 이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병과형에서의 권고형량이 징역형만의 권고형량과 동일한지 등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 필요 있음
  - 실무상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명의대여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를 다소 감경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는 실업주가 따로 있고 속칭 바지사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지사장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요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주와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가중요소로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할 필요 있음
  -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형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교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수교사의 경우 장기 또는 다액의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어 양형가중요소로 삼는 것과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요소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감경요소로 하는 외에 이를 가중요소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 특히, 조세범죄의 경우 전형적인 범행형태가 대표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로 조세포탈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 수수 등을 하는 것인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가중요소로 삼는다면, 대부분의 조세범죄는 가중유형에 포섭될 우려가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과 관련하여 특별감경인자 중 행위요소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반감경인자 중 행위자요소로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이 바람직함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특별가중인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유형(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위반 범죄)은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수에 따라 제1유형(30억 원 미만),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유형(50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그 가중 요소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서 그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수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위 제2, 3유형의 경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 '영리의 목적'이 범죄의 구성요소로 되어있으므로,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서 가중요소로 되어있는 '영리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의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대한 평가가 같은 지, 다른 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음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의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다시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보는 것은 형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집행유예 부정사유로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특별감경인자인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세포탈범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인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의 의미를 포탈세액 중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2/3 이상의 납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탈조세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그 기준을 1/2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
  - 상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범죄라면 비록 이번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치더라도 행위자의 신분적 특성을 감안,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함
  - 기존의 다른 범죄군(성범죄, 사기범죄, 마약범죄 등)에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일반가중요소로 설정된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과의 균형상 특별가중요소로 설정함이 타당

(3) 대한변호사협회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양형구간에서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과 200억 원 이상을 하나의 양형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구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또한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양형구간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이 지금까지 법관들이 선고해 온 형량을 경험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입법자가 규정한 법정형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한계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고, 한편 양형구간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재벌 등에게 관대한 판결을 선고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세

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 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부분에 반대함

- 법률상 그와 같이 가중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특가법 자체가 이미 일반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을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가중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음
- 또한 만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자신의 조언이 탈세를 유도하는 행위라거나,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계획적, 조직적 범행가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이미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직업적 요소로 특별가중을 한다면 이중가중에 해당하게 됨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에 있어서 상습성의 발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범죄습벽의 발현' 이라고 볼 수 없는, 단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함
  - 적극설과 소극설의 논거가 모두 불분명함
  - 적극설은 상습적 행위와 일회적 행위 사이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습범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는 당해 범죄의 횟수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범죄자의 '습벽의 발현' 에 의한 것이냐 이고, 또한 이미 기존의 양형기준에서 가중적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러 범죄유형을 일반 범죄유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 또한 소극설의 논거인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는 논거 역시 양형기준의 취지는 법률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 상습범에 대하여 특별한 교정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무거운 처벌을 과하는 형법의 기본적 태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상습범' 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습범이란 범죄습벽의 발현 여부가 중요한 표지이지 다수 행위의 반복이 중요한 표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적극설과 같이 단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별가중요소

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에 있어서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는 '상습범' 의 경우이고, '상습범' 이 아니라 단지 동종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한 경우는 이른바 '영업범' 의 속성으로서 이는 일반 가중요소로 존치하여야 할 것임

- 조세범죄의 경우 가중요소로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지휘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지휘자 역시 정범의 형태로 범죄에 관여하게 될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게 될 것이어서 동일한 하나의 표지가 2개의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마련하거나, 하나의 양형인자로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와 '포탈한 세액 중 일정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가 각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데, 포탈한 세액 중 3분의 2이상이 징수된 경우를 가정한다면 양자는 포탈한 세액의 회수라는 결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체납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느냐 여부의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인자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라는 질적 차이가 있는 양형인자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임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유형에서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역시 잘못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큰 요소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라는 제한문구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당해 업체와 거래를 끊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더러, 그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에 있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설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중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및 50억 원 이상은 각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유형으로서 이를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가중양형인자로 설정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특가법의 구성요건 규정이 명백하므로 과연 어떤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영리를 목적으로' 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계속적 · 반복적 범행' 의 의미가 불명확함
  - 예컨대, 연속범, 영업범 등 위 인자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은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소극가담' 에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5) 한국세무사회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일반 조세포탈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위 내용과 같은 가중요소는 ① 세무사 등이 납세의무자와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 당해 세무사 등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 납세의무자와 세무사 등 모두에게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또는 ② 공범관계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의할 경우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행위 등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조세포탈과 특가법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자 또는 그

공범에 대해 양형가중요소를 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임

- 만약 세무사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라면, 세무사 등의 신분 그 자체를 가중요소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들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 및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만을 가중요소로 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허위신고 행위 및 그에 대한 선동, 교사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2조에서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자동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가법에서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고(벌금형 없음) 그 법정형도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또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서는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끝난 날로부터 1년, 선고유예는 그 선거유예기간 동안 등록취소가 되며(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별도의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은, 동일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이 있거나, 세무사법 또는 특가법 등에 의해 이미 그 형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동일행위에 대해 다시 양형가중요소로 참작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이중의 처벌을 하는 결과가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위 가중요소는 조세포탈에 대한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 일반 조세포탈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습범인 경우'는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4항이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을 범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양형 가중사유를 적용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특별가중요소인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은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세무사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알선,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공범의 행위로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그 행위자가 세무사 등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를 다시 양형가중요소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정범보다 가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다시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사실상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위 양형가중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 특별가중요소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 대해 계속적 위임관계의 중단 및 기타 협박, 강요,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 대해 이를 감경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를 경우 ① 양형이 가중되어야 할 행위가 정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② 이미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가중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시 가중하게 하여 사실상 이중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6) 한국조세연구포럼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일반양형인자에서 '진지한 반성' 이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양형인자의 정의에는 '진지한 반성' 의 예시가 누락되어 있음

나.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1) 대법원

▸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공갈죄의 경우 유형 구분상 금액 중 3,000만 원 미만이 제1유형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갈범행의 경우 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아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1,000만 원 미만을 제1유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됨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일반공갈 유형의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대부분 사기범죄 양형기준보다 형량범위가 높은데도 감경영역만 사기범죄와 동일하게 보는 불균형이 존재함
  - 공갈범죄의 행위태양이 사기범죄보다 위험요소가 많고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액 기준) 중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하한의 일부가 사기범죄와 같을 뿐 대부분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사기범죄보다 높음에도 유독 감경영역의 하한과 상한은 대부분 사기범죄와 동일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한 것은 공범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저한 손해의 회피 등 특별히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저한 손해의 회피 등 특별히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의 예로는 피해자로 인하여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추가함이 바람직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공갈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하고 있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추가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 중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행위 요소로 볼 수 없고, 범죄수익을 사후적으로 처분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임
  - 양형인자의 정의 중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의 반대말과 다를 바 없어 공갈범죄는 가중영역에 해당하거나 감경영역에 해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액을 소비한 경우보다 은닉한 경우를 가중하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됨
-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하는 경우 뇌물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

립하여 어느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데(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동종 전과' 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 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다보면 피고인의 전과 중 어느 범위까지 동종 전과로 보아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공갈범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함으로써 사기죄에서 일반참작사유로 한 것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기죄와 달리 정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정 점포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미합의된 경우,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갈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집행유예에 대한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가 3개,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가 1개로서 실형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적 공갈범행 중 다수 사건은 식당 운영자들,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에 대한 공갈범행으로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보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법무부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특정 유형(예를 들어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서 감경, 기본, 가중 3개 영역에 선고형량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데, 양형인자의 영역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고, 양형기준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의 법정형(5년 이상)과 상습, 누범, 특수공갈

의 법정형(3년 이상)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상습공갈범죄군도 이득액의 다과에 따라 형량 범위를 비례적으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안은 '공무원의 지위,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행위요소적 인자에 행위자적 요소를 포함킨 것으로써, 체계 부적합하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한변호사협회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일반공갈 5유형(피해액 50억원 이상)의 감경형량 상한(7년)과 가중형량의 하한(7년)이 일치하는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징역 7년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한 형량만 가지고는 그 형량이 감경에 의한 형량인지 가중에 의한 형량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양형구간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감경상한과 가중하한에 다소라도 차이를 두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실제 사례에 있어서 중첩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동일한 표지의 행위요소를 이중적으로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의문을 부기하거나, 차라리 후자를 전자의 한 유형으로 예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에 있어서도 후자는 전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어 별개의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의문을 두거나, 후자를 전자의 한 예시유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공갈의 정도는 가해자의 행위요소인데 비하여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피해

자 측의 사정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상호 성격이 다르므로,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둔 것은 부적절하고, 이를 별개의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예시로 '고소, 고발 등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를 두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를 고려할 때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다소 초과한 경우'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두고 있는데 당해 행위태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으로 양형기준상 특수공갈로 분류되는 것인데 과연 특수공갈을 제외하고 어떤 행위태양이 여기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일반사기나 조직적 사기에 있어서는 일반양형인자의 행위가중요소로 규정하였으나, 일반공갈이나 상습공갈 등에 있어서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양형요소라면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4)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특별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에 공통된 의견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
  - 공갈범죄는 특성상 만취상태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안과 같이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동안 음주에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였던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
  - 그 동안 만취상태를 심신미약 등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실제로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실제 현실이므로 이번 기준안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1) 대법원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방화 후 진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는 특별가중인자가 아니라 일반가중인자로 하는 것이 상당함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들고 있고, 그 예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를 들고 있음
  - 그런데 실제 방화 사건을 심리하다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여서, 이러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다면 권고형의 범위가 너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양형인자보다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방화범죄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통상 치료감호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화범죄에 있어서 감경요소인 심신미약상태를 '본인 책임 없음'의 경우와 '본인 책임 있음'의 경우로 구분하지 말고 '심신미약상태' 전부를 특별감경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물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구체적 경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살인죄의 하한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이 높으므로 양형기준 역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결합범 형태의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 양형기준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임
  -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전체적 대조주의를 몰각한 것이며, 중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형법 제40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이 잘못된 판례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중한 죄인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하되, 그 하한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인 7년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 역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살인의 고의가 없이 현

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방화죄의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의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는 방화죄 부분의 양형기준에, 후자는 살인죄 부분의 양형기준에 규율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죄 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중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의 감경형량 상한(10년)과 가중형량의 하한(10년)이 일치하는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한 형량만 가지고는 실제 도출된 형량이 감경에 의한 것인지 가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감경상한과 가중하한에 다소라도 차이를 두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죄의 특별감경양형요소인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분의 정의 중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와 특별가중양형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부분의 정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평가관점에 따라 감경요소도 될 수 있고 가중요소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의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복, 원한, 증오감에 의한 범죄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보복이나 원한 또는 증오감이 발생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감경요소로 적용할 것인지 가중요소로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므로 가능한 한 정의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3)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도 있음

• 예컨대, 위 인자가 연속범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상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갈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어야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일반양형인자 중 별도의 감경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함

V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대상 기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가족부,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행정안전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 등 33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2 시행 내역

가. 조회 기간

▸ 2013. 3. 26. ~ 4. 10.

나. 의견 회신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

의전화, 대한법무사협회 등 10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YWCA연합회, 여성가족부, 대한법무사협회 등 13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 왔다.

3 양형기준안별 회신의견 종합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살인죄 가운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의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2013. 3. 5.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함에 따라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 의 내용을 일부 수정[4]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을 참작 동기 살인의 예시로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함
- 피고인의 형편 등이 어려워 우울한 상태에 이르러 살인한 것을 유리한 동기로 참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함

3) 2013. 3. 29. 정부 이송되어 2013. 4. 9. 현재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 즉시 시행 예정임.

4) 형법 개정안은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 규정되어 있던 '추업사용 목적' 을 삭제하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을 추가하였음.

- 친족의 범위가 매우 넓음에도 일률적으로 친족에 대한 범행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 피해자를 개호 · 부양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
- 범행의 동기는 조작될 우려가 많으므로 동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동기는 특별양형인자 정도로 고려함이 타당함
- 유형의 정의 부분에 '친족' 과 '가족' 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친족' 으로 통일함이 타당
- 양형기준안은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의 예로 ①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②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②의 예는 수긍이 가나, 위 ①의 예는 ②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여서 예시로 부적절하며, 특별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족함
- 현행 양형기준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을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에 포함시켰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 은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등 다른 유형의 '비난 동기 살인'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함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관련
  - 개정된 아청법 제10조 제1항(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 등)을 반영하여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다만, 형법 제301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의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 이외에 유사강간살인이 추가되었으므로 제4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살인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폭력범죄군(폭행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폭행치사)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통 동기 살인' 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 상한이 16년인 것은 현재의 평균 수명에 비추어 경한 면이 있음
- 특별조정 결과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별도의 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지시에 따른 범행' 을 유형분류의 기준이나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와 관련하여, 현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로 정의하고 있으나,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경우' 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중한 상해' 와 관련하여 치료기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통상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하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치료기간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할 만한 요소가 없어 부득이 기존의 양형기준에서는 치료기간이 4~5주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후유장애,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양형인자의 정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수정안처럼 객관적 기준을 삭제하면 오히려 양형인자의 객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양형인자는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들에도 공통되는 요소이므로 치료기간을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의견

- 살인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기존의 경합범 처리례에 따라 단순 가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므로, 적어도 살인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가중방식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생명을 피해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에서 다른 범죄와 같이 동일 기회에 벌어진 다수 범죄라는 이유로 단순가중을 하는 것은 부적절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 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잔혹한 범행수법' 은 다음과 같이 다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음
  - '잔혹한 범행수법' 은 방화나 폭발물을 이용하여 살해한 경우, 흉기로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른 경우,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대부분 '중한 상해' 가 동반될 것이므로, '중한 상해' 와 중복 적용의 우려 있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라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3) 법무부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참작 동기 살인' 의 형량범위 수정)

-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성범죄 · 뇌물범죄 등의 양형기준 중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유형이 존재
  - 예를 들어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가중영역' 의 하한이 법정형 하한(징역 5년)과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음(최소한 가중영역의 하한은 법정형 하한보다는 높아야 함)
  - 참고로 참작 동기 살인에 있어서 긍정적 양형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유형에서 감경 영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가중영역의 하한을 높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큰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참작동기 살인유형에서 형량 범위를 제시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4) 대한변호사협회

※ 이하에서 반대하는 부분 외에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함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제1유형 참작동기 살인의 설명문에서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이 국민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친족' 과 '가족'

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형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손쉽게 살인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감경유형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문에서 잘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위 양형요소를 설명하면서 '친족'이라는 용어와 '가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민법상 양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특별히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면 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일 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고, 친족은 일반적으로는 가족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민법 제777조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있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용어를 통일하거나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살인죄의 구간별 형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음
  -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기본, 가중형의 형량 폭이 종전에 4년, 4년, 5년이던 것을 5년, 6년, 35년으로 개정하고,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4년, 4년, 10년이던 것을 6년, 5년, 32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폭이 넓다고 생각됨
- 제1유형과 제2형 사이의 형량 간극이 지나치게 넓은 바, 제1유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제2유형 이하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히 살인죄의 형량 구간 설정과 관련하여 1유형(참작 동기 살인)과 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사이의 형량 간극이 지나치게 넓음. 살인죄의 법정형을 고려한다면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기준형량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살인죄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가장 중요한 범죄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양형체계상 살인죄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사는 살인죄에 관하여 2년 6월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법정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 유형 중 기본유형의 상한은 6년임에 비하여 그 다음 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중 기본유형의 하한이 10년이어서 6년과 10년이라는 지나치게 넓은 형량의 간극이 생겨나게 되어 이와 같이 간극을 허용하는 양형기준이 입법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임

-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기준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함

• 수정안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유형에서 7년 이상, 기본유형에서 10년 이상, 가중유형에서 15년 이상의 형량을 구획하고 있는데, 제1유형의 참작 동기 살인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히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은 제2유형의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형량을 10년~16년(기본유형)으로 구획한다면, 실제 실무에서는 대체로 12년 내지 13년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자가 법정형으로 규정한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유형의 형량을 이와 같이 2배 이상 높게 구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형기준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움

▸ 기타 의견

- 단기간 내의 개정은 적절하지 않음

• 양형기준의 수립이 실질적인 입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09. 7. 1. 양형기준을 세워 시행한 이래 3년 6개월만의 개정은 지나친 단기간 내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정도는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양형기준의 수정을 통해서 살인범죄에 대해 형량범위를 상향한다고 해서 과연 살인범죄의 내용이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일반

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사재판의 양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인식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사형제도폐지 등 정책적인 문제점과 함께 시행 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함. 지나치게 국민의 비판여론이나 실적 위주에 편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제4유형)에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은 명백히 살인죄의 양형체계에 포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한 판례를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것은 부당함.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상적 경합과 관련하여 전체적 대조주의를 몰각한 것이며, 중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형법 제40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이 판례를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양형기준체계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의 경우 중대범죄결합살인 유형에 포섭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유형에 포섭하고 있으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결합범 형태의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 양형기준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임
  - 현행 형법상 동일한 행위유형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치사죄' 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살인' 죄로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에는 치사죄와 살인죄를 동일한 법정형인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7년)에 비하여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우려가 있음
  - 이런 이유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5] 이러한 판단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처단형을 정할 때 전체적 대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반적 학설 및 대법원 판례[6]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중한 죄인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하되, 그 하한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인 7년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적용임

- 이에 따라 양형기준 역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살인의 고의가 없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방화죄의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상당함

(5)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모두 찬성함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수정안은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 성범죄, 뇌물, 사기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는바, 이에 찬성함
  - 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묻지마 살인,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5)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6)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등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임

▸ 기타 의견

- 그 밖에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일부 수정,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 신설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 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한 것 등에 대해서도 찬성함

(6) 참여연대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부분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을 추가하여 그 예시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국가가 생명경시의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러한 양형인자가 실제 재판에서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참작 동기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같은 책임능력상의 고려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위 '치료중단 안락사' 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 을 제외한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급격하게 상향조정되었는바, 그 상향조정의 합리적 이유와 적절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짐

▸ 기타 의견-양형기준 설정 원칙과 방법에 관한 의견

- 살인범죄 자체의 양형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 · 검토보다는 성범죄와 뇌물범죄 같은 특별법상의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법론상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검증할 수 없는 국민여론에 기대어 양형기준을 수정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고의 가치인 인간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범죄가 모든 범죄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권고형량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그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에 비추어 살인범죄의 권고형량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물론 입법부가 국민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성폭법, 아청법 등 성범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높게(아동성범죄의 법정형은 사형을 제외한다면 살인죄보다 중함)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 권고 형량의 범위구간이 넓어지면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짐. 이번 수정안은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면서 구간이 종전 3년 내지 4년이었던 것이 예컨대 살인범죄의 경우 5년(3유형 기본), 7년(5유형 기본), 10년(4유형 기본) 등으로 넓어졌음.
- 양형기준의 급격한 수정은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살인범죄의 행위시점은 동일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수정되기 전과 후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여론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순히 언론보도를 국민여론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함에 있어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제외하였으나, 이 유형만 제외하고 다른 유형만 상향을 하게 되면 유형 간의 불균형이 생기고, 기준을 상향시키되 그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을 선택함으로서 구체적 타당성도 기할 수 있으므로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 역시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중한 상해에서 일응의 객관적 기준 삭제 문제)

- 상해의 주수를 정해 놓은 것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보다 상해와 중한 상해를 구분하는 일응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4주, 5주 또는 6주로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이면 중한 상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한 상해의 예를 봤을 때 4주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의 문언이 있으므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에 대한 평가
  - 살인범죄는 매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순간적인 격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혹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 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참작 동기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와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를 추가 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평가됨. 양자 모두 규범적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오로지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를 참작 동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오히려 참작 동기로 설정하여 양형을 낮게 가는 것으로 형사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 보다 양형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행형의 단계에서 재사화화를 위한 치료 및 적극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살인죄의 양형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
  - 살인죄의 양형 중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이 성범죄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형량이 동일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살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상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존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 개별 범죄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의하면 개별 범죄별로 양형의 또 다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죄별로 그 가중치를 두어 범죄 등급을 정하여 놓고 이에 대한 처단형의 기본적인 범주를 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살인범죄와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하면 '생명권' 보호가 '성적자기결정자유' 보호 보다는 우선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양형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별 경중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도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현 살인죄의 양형인자 중 특별 행위 감경인자에 '피해자의 유발(강함)', 일반 행위 감경인자에 '피해자 유발(보통)' 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유책성에 의한 살인은 대부분 제1유형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살인범죄가 대부분 격정적 우발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유발은 살인죄에 개념 내재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살인범죄에서는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살인범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유발을 감경인자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해자의 유발이 반드시 감경인자로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의 양형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유발이 강함 혹은 보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 양형기준은 모든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가중양형인자와 감경양형인자 사이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1:1의 상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유발이 강함(특별감경행위인자)과 잔혹한 범행수법(특별가중행위인자)이 1:1의 상쇄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에서 기본으로 수렴하게 됨. 따라서 양형인자 간에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유예 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과 관련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지능범에 해당하는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와 같은 경우 범죄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일견 분명하다

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라는 참작사유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범죄에 있어서 볼 수 있듯이 화이트칼라 범죄인 경우 구속 수감되면 평소 건강하던 피고인도 지병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의 온정적인 판단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당해 참작사유는 형의 집행단계에서 형의 집행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별개의 참작사유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과 관련하여 범죄에 수반하여 당해 가족이 일정 부분 금전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집행유예의 선고는 광의의 양형판단으로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참작사유는 재범의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고령' 과 관련하여 현대 과학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평균기대수명이 확대되는 작금에 있어서 '고령' 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고령' 이 수형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나이를 특정하거나 '고령' 과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결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9) 한국여성의전화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양형인자 '피해자 유발' 의 정의에서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은 유형을 분류할 때 고려하되, 사건이 벌어진 직전의 가정폭력 실태는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즉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은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가정폭력이 없었던 경우는 유형 분류단계에서만 고려하고 양형인자 부분에서는 피해자 유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유형 분류단계에서도 고려를 하고

양형인자 부분에서도 피해자 유발로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규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사건 당일에 구체적, 물리적 폭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형 분류단계에서만 고려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당일에 있었던 구체적 폭력은 양형인자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의 불명확성
  - 살인 범행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도구의 소지나 준비는 시간적으로 살인 범행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그런데 양형기준의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항목의 경우 그러한 도구의 소지가 우연한 기회에 의한 것인지, 살인의 목적으로 준비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고, 나아가 단순히 범행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전 준비 및 소지'로 기술되어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함
  - 살인에 있어 범행을 '준비'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형인자 설명만으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인자가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가중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범행 직전이라도 범행에 대한 준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계획적 범행은 범행의 준비와는 분명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양형기준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임. 그렇기에 양형기준이 제시되었어도 양형기준을 놓고 또 각각의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극대화될 것임
  - 지금과 같은 규정만으로는 살인죄 피고인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도구를 집어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이 있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나열된 여타 요소인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따라서 지금의 규정을 '범행도구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 내지 취득' 등으로 한정한다거나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만으로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이외에 사전 공모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준비가 있는 등 추가적으로 해당 살인이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석의 불명확성
  - 살해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자인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약자에 대한 살해 행위라는 점에서 그 가중처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양형기준은 이러한 피해자의 범위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 한 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문언 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석을 함에 있어 주취자 등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포섭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 주취에 의하여 오히려 공격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살인의 경우에도 주취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으로 포섭한 판례들이 있어 문제가 있음[7]
- 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이거나 피해자에 중대한 고통을 가하는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요구되고, '잔혹한 범행 수법' 의 경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항목으로 보임. 그러나 '잔혹성' 의 경우 상대적인 평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그 항목 설정과 표현에 보다 신중하여야 함
  - 살인범죄의 경우 판례에서 '잔혹한 범행수법' 이 쉽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참여재판 등의 재판실무 상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인범죄가 다루어질 때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에 미치지 않은 경우더라도 '잔혹한 범행수법' 이라는 요소의 명칭 때문에 배심원에 의하여 쉽게 양형요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함. 특히 살인이라는 결과의 발생의 전제로서 가해자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잔혹한 범행수법이 쉽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 사건과 같이 참작할 여지가 많은 살인범죄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빈도가 극히 축소될 우려가 있음

7) 2012고합311 판결의 경우 상습적으로 주취하여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자를 살해한 사례인데, 이 경우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 외에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해의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가격빈도가 높아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음. 또한 '잔혹한 범행수법' 이라는 양형인자는 가해행위의 양태 자체보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한 가해자의 잔인한 '의도' 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것임을 생각할 때, '잔혹한 범행수법' 인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의 요소들인 공모성이나 계획성, 준비성과 결부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양형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때, 결국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심리 상태가 특별히 비난받을 정도여야 가중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데,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에 무조건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 예컨대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거나 공황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잔혹한 범행수법에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부분을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특별히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로 수정해야 함.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의 가해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계획적 범행에서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현재 양형기준 상으로는 참작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영역에 포함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데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기준이 제시되어 기수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사건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라 해도 참작동기 살인-감경 영역에 있으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살인미수에만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은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요소만을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살인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임. 따라서 살인범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의견

- 현재의 양형기준은 양형인자가 어떠한 것이 있다고 나열하고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가중적 요소인지, 감경적 요소인지 설명이 부족함
- 또한 양형기준에서 서술되고 있는 단어나 개념이 전반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함
  - 양형인자 각각이 왜 가중적 요소와 감경적 요소에 포함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의 의사록 같은 것을 따로 제시하여, 양형기준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10)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 없음

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유형분류에 관한 의견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시의 양형기준에 있어 '청소년 강간/위계 · 위력 간음', '청소년 유사강간' 이 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청소년강간 등이 피해자에게 주는 큰 충격과 정신적 · 육체적 후유증을 감안했을 때(비록 친족관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이 보는 것은 형벌의 균형에 맞지 않으며 적어도 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같이 분류하는 등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기 보다는 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으로 포섭하되 친족관계/청소년이 중복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일반적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감경요소로 고려되던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 삭제되었으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바 위계 · 위력을 위 폭행 · 협박과 대등하게 평가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여야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위계 · 위력도 폭행 · 협박에 준하여 처벌(감경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 이상의 성인인 경우 폭행 · 협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계 · 위력이 아닌 이상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대법원

▶ 유형분류 및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유사강간' 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재검토 필요
  -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안에서는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님
  - 과거 선고 사례를 보면 공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 보아도 성폭법이나 아청법상 강제유사성교죄로 기소해야 할 사안을 검사가 단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아청법상 청소년 대상 강제유사성교는 물론 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인 대상 강제유사성교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표를 적용하고 있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수정안과 같이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분류할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는 양형인자의 적용이 불가능한데, 실제 사안에 따라서는 위 인자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컨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례와 성기에 손

가락을 단 1회 삽입한 사안을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권고 형량범위상 큰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형법상 준강간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죄(의제강간)에 있어서는 법문상 여전히 종전과 같이 처벌대상을 '간음' 행위(성기삽입)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 준유사강간죄, 의제유사강간죄를 상정할 수 없음
- 신설된 범죄 또는 유형을 기존 유형에 포섭하는 것보다는 새로 항목을 만들어 별도로 형량범위를 권고함이 적절함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와 관련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위계 · 위력추행을 2유형(일반강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강제추행과 강간은 엄연히 죄의 성격이 다르고,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추행도 인정하는 등 판례상 그 인정 범위가 넓고 유형이 지극히 다양하여, 상대적으로 성립 자체가 엄격한 강간(폭행 · 협박의 의미나 간음의 의미 해석이 엄격한 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강제추행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양형의 폭을 넓히고 법관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거나 또는 제2유형에 포함시킬 경우 상한과 하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관련
  - 아래의 서술식 양형기준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수정안]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유사강간' 은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이 아닌 강도강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서술식 기준의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 이라는 부분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임
- 이러한 문제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 유형에 '유사강간치사' 를 추가
  - 개정 형법은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독립된 성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하였으므로, 위 유형의 구분명에도 이를 명시하여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를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조정에 원칙적으로 수긍하나, 다만, 감경영역 하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한 것은 작량감경 시 선고형이 5년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의하여 선고 가능한 범위를 6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되어 부적절하므로, 법정형이 같은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각 가중영역이 종전보다 많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하향할 필요가 있음
-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행위태양의 측면에서는 강간보다 경한 면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형법 개정 내용과 같이 하한만 2/3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 성년유사강간은 성년강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반하여 청소년유사강간은 청소년강간과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어 문제임
  - 청소년유사강간과 청소년강간의 유기징역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년, 장애인, 13세 미만의 경우 모두 강간과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르므로, 청소년의 경우에만 강간과 유사강간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의문이 있음
  - 특히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강간에 비하여 광범위함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권고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청소년 강제추행 · 강간상해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청소년 강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높음에도, 양형기준 수정안에 의할 때 청소년 강제추행상해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가 청소년 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3년~5년6월,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문제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가중영역을 상향조정한 것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통 동기 살인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무기' 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삭제하거나 일반양형인자로 변경함이 타당
- 특별양형인자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기습추행' 등과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도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중복 평가의 문제가 있음
- 현재 '상당 금액 공탁' 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공탁이나 검찰을 통하여 합의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가중요소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이미 유형을 달리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재차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 중복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의문이 있음
- 성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낙태한 경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함이 마땅하겠으나, 특별가중인자인 '중한 상해' 의 예시인 '후유장애, 심한 추상장애 또는 위험한 부위 상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낙태한 경우' 를 '중한 상해' 의 예시로 추가하거나 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할 필요 있음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다만, ①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와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적어도 일반감경인자로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②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에서는 위 인자를 존치하거나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3) 법무부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형량 범위 수정 필요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 현재 제2유형에 속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은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과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유기 징역형이 2년 이상 더 높아 법정형이 서로 다름에도 같은 제2유형으로 포섭되어 있어, '동일 유형, 같은 법정형 원칙' 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법정형 비교]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법 제5조①항 : 징역 7년 이상)
- 주거침입등 강간(성폭법 제3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특수강간(성폭법 제4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청소년 강간(아청법 제7조①항 : 무기, 징역 5년 이상)

• 현 기준안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의 하한은 5년으로 이는 법정형(징역 7년 이상) 이하로 하향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가중 또는 감경적 양형 요소가 없는 기본적인 사안에서 처음부터 법정형 이하 선고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정형 하한을 기본 영역의 하한으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형량범위를 제시함(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법정형이 유사한 '13세 미만 유사강간' [8]의 형

8) 성폭법 제7조② : 13세 미만 사람을 유사강간 →법정형 징역 7년 이상

량범위를 참고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년 - 5년6월~~ 4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8년 - 12년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형량 범위 조정 필요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 · 위력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①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형법상 일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임에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면,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하한' 5년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법정형에 상응하게 형량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유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법 제5조 제2항 참조)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그 보다 낮은 법정형을 가진 장애인 강제추행(성폭법 제6조 제5항, 법정형 징역 3년 이상)과 같은 형량범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임
- 아울러, 가중영역(징역 4년-7년)의 하한이 징역 4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즉 가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될 수 밖에 없도록 양형기준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같은 법정형을 사용하고 있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감경영역의 하한, 기본영역의 상한, 가중영역의 하한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년6월 - 3년~~ 3년 - 5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4년 - 7년~~ 5년 - 8년

③ 제2유형 중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으로 유기징역형만 비교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과 동일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 범위를 제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주거침입 등에 의한 강제추행	~~1년6월 - 3년~~ 3년 - 5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4년 - 7년~~ 5년 - 8년

④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 현재 수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의 상한과 하한의 각 2/3로 감경한다는 취지로 부기함으로써, 이를 산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셈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 그러나 실무상 '1년 8월', '3년 4월', '2년 8월', '4년 8월' 등 월 단위로 선고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 법정형을 대비하여 유사한 법정형을 가진 형량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다면, '징역 3년 이상' 이라는 법정형을 가진 '특수강제추행' 의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아래의 형량범위를 제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청소년 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형량 범위 조정 필요

[현재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생/위계위력 추행,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는 3유형에 포섭

①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포함) 상해/치상과 관련하여 제3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아청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신설되었음. 현재 수정안은 청소년 강제추행 상해/치상을 제2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제시, 즉 이는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제추행' 의 법정형(징역 2년 이상)이 강간죄의 법정형(징역 3년 이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청소년 강제추행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치상(성폭법 제8조 제2항)과 법정형이 같음
- 또한,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제추행' 은 '강간' 과 행위 방식이 전혀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오히려 기본범죄 성격이 유사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법정형, 기본범죄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3유형으로 포섭되어야 함

② 청소년 강간(또는 유사강간) 상해/치상 관련하여 제4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아청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신설되었음. 현재 양형기준 수정안은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해/치상을 제3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제시, 즉 이는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의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법정형(징역 5년 이상)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7

년 이상으로,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치상(성폭법 제8조 제2항)과 법정형이 같음. 또한, 기본범죄인 '청소년 강간'을 '친족관계 강제추행'과 행위방식이 전혀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오히려 기본범죄 성격이 유사한 '친족관계 강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따라서 '법정형, 기본범죄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4유형으로 포섭되어야 함

[13세 이상 대상 치상/상해죄의 법정형과 기본범죄 법정형]

유형	구분	상해/치상 법정형	기본범죄 법정형
1	일반강제추행	무기, 5년 ↑	10년 ↓
2	일반강간	무기, 5년 ↑	3년 ↑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기, 7년 ↑	5년 ↑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기, 7년 ↑	7년 ↑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무기, 10년 ↑	무기, 5년 ↑ 또는 3년 ↑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무기, 10년 ↑	무기, 5년 ↑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
  -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개정법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시도, 합의 종용, 합의 강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특별가중인자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부부관계,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관계)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범죄로 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후유증을 남김. 영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권력의 남용과 신뢰관계의 남용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아는 관계에서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력이 없는 일반가중이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의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개념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하거나,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전제되거나 오히려 가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살인범죄 또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참작사유가 긍정적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구속이나 형의 집행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일 뿐 집행유예의 선고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 · 무전유죄의 지탄을 받는 대표적 참작사유 중 하나이므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은 삭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함
  -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이 요소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범죄의 심각성 · 중대성이나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피고인의 고령' 은 적용 범위를 한정함이 타당
  - 고령 여부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령' 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 이 낮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삭제함이 타당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진지한 반성' 의 경우 '진지한 반성' 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정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거짓태도 등으로 오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 기타 의견

- 각 양형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인자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단순히 나열하고 각 특별양형인자 또는 일반양형인자의 평가에 있어 이를 1:1로 동등한 가치를 두고 그 인자 수에

따라 형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량범위 결정에 있어 단순한 양형인자의 개수로 판단하는 것은 양형인자에 따라 그 중요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반 양형인자에 어떠한 규범력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같은 형량범위 내에서도 양형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조문 규정형식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특정범죄유형의 법정형과 이에 상응하는 형량테이블 유형간의 형량 차이의 모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양형기준 설정시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4)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 현행법상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모두 포함함. 대상자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서 일률적으로 위계 · 위력에 의한 경우를 모든 양형요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폭행 · 협박에 의한 경우와 위계 · 위력에 의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와 비교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경우는 적어도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함
  - 물론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계 · 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장애 등을 이유로 위계 · 위력에 의한 경우를 폭행 · 협박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양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함
  - 즉, 위계 · 위력에 의한 경우를 폭행 · 협박에 의한 경우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삼는 것이 적절하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위계 · 위력에 의한 경우와 폭행 · 협박에 의한 경우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달리 평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사기와 공갈 등)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에서는 다른 형량을 적용한 사

례가 있음

-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부분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살인죄의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부분에서 종래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는 문구가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는바, 기본적으로 범죄의 유형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표현의 양형인자는 동일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통일적 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성범죄의 경우에 '중한 상해' 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적 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살인죄에서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는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는 양형기준 시행 이후 벌어진 살인미수범죄의 거의 절반 가량이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영역만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바, 그렇다면 통상 폭행을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치료기간이 대부분 4-5주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만일 성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상해의 결과가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인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중한 상해에서 치료기간 4-5주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의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수립되는 셈인데, 유독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형법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포함하여 이 죄에 대한 양형자료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양형기준을 수립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히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누락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만일 양형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양형기준을 수립할 수도 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의 수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 또한 양형기준 적용범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생략된 채 해당 구성요건과 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양형인자 삭제에 동의함
  -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위 내용을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과 같이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만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경인자로 규정한 기존의 양형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았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도 강간, 강제추행의 예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번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기타 의견

- 실제 선고형과 양형기준의 간극이 커지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조정 및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 등에 따라 양형기준을 조정한 부분은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별다른 합리적 검토도 없이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칫 양형기준조차도 재판실무와 동떨어져서 허울뿐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실제 선고형이 양형기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6)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모두 찬성함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임에도 그에 대한 권고형량 기본영역이 법정형 하한의 경계에 있거나 그에 못 미치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정안은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 범죄들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범죄들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찬성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고, 이에 찬성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전적으로 찬성함
  - 수정안은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바, 전적으로 찬성함
  -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들 피해자의 특성상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계 ·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음. 피해자의 이와 같은 특성과 이를 악용하는 범죄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행위불법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7) 참여연대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과 관련하여 강간치사와 강제추행치사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본범죄의 불법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형기준이 동일한 권고형량을 제시하여 형법 이론적으로 문제(결과책임사상)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높임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폭행 · 협박과 위계 · 위력은 행위불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객체가 아무리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 ·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계 · 위력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기타 의견

- 성범죄 법정형의 거듭된 개정이 그 적절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처벌강화를 위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개정함에 따라 그 권고형량범위를 수정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형량범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정안은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에 대하여 일반강간의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하고 있는바,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측면에서 본다면 행위불법이 강간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을 고려해본다면 강간죄에 비해 오히려 죄질이 더 좋지 않다할 것임
  -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주거침입등유사강간/특수유사강간 및 강도유사강간 등에서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가 동일하게 양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은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해보더라도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형량범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의견

- 근본적으로는 살인죄 및 성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를 양형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타당함
  -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계 · 위력의 행위불법이 낮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감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현 수정안에 의하면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및 의제유사강간일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본다면 결코 자신의 음부에 대한 간음 행위와 비교하여 구강 혹은 항문에 대한 유사 간음행위로 인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침해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함. 또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감경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친족간 성범죄에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 불원' 은 삭제하는것이 타당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간 성범죄가 2008년 293건에서 2010년에는 369건, 2011년에는 469건으로 4년 동안 60% 늘어났는바, 친족간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임. 친족간 성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인 아동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하고자 한 경우에 비해 이를 숨기거나, 아버지 혹은 특히 자신의 남동생(외삼촌)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됨. 법원에서도 친딸을 성폭행한 아

버지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관한 어머니를 방조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는커녕 범죄를 숨기고 조장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의 특성(어머니 역할의 부재)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감경사유로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가족의 해체 등을 우려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감경인자로 판단하여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 아동과의 가족 구성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피해 아동을 다시 2차 성폭력의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

- 가중 · 감경 양형인자 수의 불균형 문제

•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13세 이상 강간죄에서 특별 감경 행위 인자는 하나도 없는 반면 특별 가중 행위 인자는 9개나 됨. 13세 이상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2개인 반면 특별 가중 행위 인자는 5개이며,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1개이나 특별 가중 행위인자는 6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특별 감경 행위인자는 1개, 특별 가중 행위인자는 7개로 양형인자의 편차가 매우 심함

• 현 양형기준에서는 감경 · 기본 · 가중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1:1의 단순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어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중영역으로만 양형이 판단될 수 있음. 이러한 우려는 13세 이상 강간죄의 경우 무조건 발생함. 왜냐하면 특별감경행위인자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가중인자가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 가중이 되는 결과가 발생함

• 그러므로 현재의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평가 방식으로 사용되는 단순비교 1:1의 상쇄는 지양되어야 하며 개별 양형인자별로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0) 한국성폭력상담소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유사강간죄 형량 범위를 일반강간보다 2/3 수준으로 낮추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 유사강간죄를 강간죄에 준하도록 도입한 의미가 없게 됨. 유사강간죄를 강간죄보다 행위의 불법성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일반적 기준-13세 미만 대상-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간죄는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 의제유사강간죄가 의제강간죄 보다 형량을 감경 받아야 할 근거가 없음. 유사강간죄 도입 목적에는 강간죄 구성요건과 일치하지 않으나 강제추행과 차별화하여 처벌하는 것도 존재함. 따라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함

(11) 한국YWCA연합회

▸ 유형의 정의에 관한 의견

-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유형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수강도(미수범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에서 '부녀' 를 '사람'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12) 여성가족부

▸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만일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함

(13)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 없음

제6장 공청회 개최

Ⅰ 개요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 · 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7차 공청회의 경우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공청회 대상 양형기준안을 1개의 양형기준안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청회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제8차 공청회의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와 방청객이 참여함으로써,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Ⅱ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1 개요

위원회 제41차 회의(2012. 5. 7.)에서 제7차 공청회 개최계획을 의결하고, 제42차 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여, 2012. 7. 16.(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16:00부터 18:00까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 공청회 참석자

제7차 공청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공청회 대상인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발표를 한 후,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로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근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3 공청회 주제

2012. 6. 18. 위원회 제42차 회의에서 확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의 개별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4 공청회 진행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5:30 ~ 16:00	참가자 등록 및 자료 배포	
16:00 ~ 16:10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6:10 ~ 16:30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6:30 ~ 17:3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7:3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5 공청회 개최 결과

가. 진행 경과

일반시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약 1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여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설명과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을 방청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관한 의견

-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의 경우 법정형에 비례하여 일반 매수보다 권고형량을 낮게 설정하였으나, 경선절차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반 매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시켜야 함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의 경우 감경영역 하한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예외 없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으나 감경영역의 하한을

낮추어 일부 경미한 사안에는 당선유효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에 관한 의견

▶ 과거의 의례적 · 관례적 형태의 기부행위만을 상정하여 형량범위를 비교적 낮게 정한 양형기준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례적 · 관례적 행위'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도 옳지 않음

- 이에 반하여, 의례적 · 관례적 행위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에서 나아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정식 결재를 얻어 행한 '직무상' 행위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선거일 180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는 영향력이 크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야 함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에 관한 의견

▶ '후보자비방'과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안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함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관계인이 범행을 한 경우 이를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 처벌해야 함

- 이에 반하여, 사실 적시가 수반되는 후보자비방 유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을 고려하여 허위사실공표 유형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형량범위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4) 기타 의견

▶ '투표에 관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되어야 함

다. 방청객 의견

▶ 후보자비방의 경우 법원의 유, 무죄 판단이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공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2012. 7. 16.) |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1 개요

위원회 제45차 회의(2012. 12. 17.)에서 동 회의에서 의결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계획을 의결하고, 2013. 1. 21.(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14:00부터 17:50까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 공청회 참석자

제8차 공청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공청회 대상인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발표를 한 후,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창희 변호사가 참

석하였고,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연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희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3 공청회 주제

2012. 12. 17. 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의 개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4 공청회 진행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3:30 ~ 14:00	참가자 등록 및 자료 배포	
14:00 ~ 14:05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4:05 ~ 14:1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4:10 ~ 14:30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4:30 ~ 15:2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5:20 ~ 15: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30 ~ 16:00	휴식	
16:00 ~ 16:30	공갈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6:30 ~ 17:3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7:30 ~ 17:4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40 ~ 17:5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5 공청회 개최 결과

가. 진행 경과

일반시민, 조세관련 학회 연구원, 법학 전공 학생, 기자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을 방청하였으며, 이후 방청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조세범죄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법정형이 포탈세액 5억원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포탈세액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음
- 일반 조세포탈의 경우 징역형의 법정형이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안은 규범적 조정을 통해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징역형의 기본형량을 낮추는 대신 벌금형에 대하여 엄격한 기본형량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의 경우 포탈액이 3억원 미만인 때의 기본형량 하한을 6월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법정형을 고려하여 기본형량의 하한을 4월로 낮추는 것이 타당함
- 일반 조세포탈과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의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위 인자를 삭제하거나 일반감경인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양형인자로 유지해야 함
- 조세사범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자유침해범죄와 같이 징역형을 부과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장래에 세금을 지속적으로 잘 납세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조직적 · 반복적 · 계획적 범행이 아닌 한 최대한 자유형을 억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함

다. 공갈범죄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양형인자 중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은 그 표현만으로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예시를 들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공갈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기준이 없음. 실무에서는 이득액이 작고, 양형인자의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즉, 공갈의 정도가 약하거나 또는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벌금형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양형기준안은 일반공갈의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를 설정하였고, 그 정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로 되어 있는데, 위 경우는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수공갈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로서, 위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폭처법상의 특수공갈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양형인자라고 생각됨

- 양형인자의 분류와 관련하여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소극가담' 이 일반감경요소로 되어 있는데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로 되어 있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과 강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요소인데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요소로 되어 있는 등 동일한 양형인자가 범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많아서 가중영역으로 갈수록 권고 형량범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데, 중한 범죄일수록 고려요소가 많고 양형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형량범위 폭이 너무 넓으므로 가급적 편차를 줄이는 것이 타당함

라. 방화범죄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일반적 기준 중 자기소유 건조물 등, 자기소유 일반물건, 자기소유 산림은 제외되어 있는데, 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등 형법범에 대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방화범죄가 공공위험죄와 부수적으로 재산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객체 보다는 동기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위객체가 무엇인지, 그 행위객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감경인자인 '범행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의 정의규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관련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를 두고 있고, 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의 예시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을 들고 있는데, 방화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비롯되므로, 현재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체로서 하나의 범행동기를 구성하는 것임. 따라서 위 요소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화된 표현 혹은 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구성요건의 객체를 보면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광갱 등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객체들이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음. 같은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성질이 다른 만큼 구별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집행유예 기준과 관련하여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와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는 양형인자로는 볼 수 있으나 집행유예 사유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 포함시켜서 집행유예 사유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별도의 집행유예 사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마. 방청객 의견

- 상속세와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의해 상속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2013. 1. 21.) |

제7장 자문위원 회의 개최

Ⅰ 자문위원단 구성 및 위촉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2012. 4. 2., 2012. 7. 23., 2013. 1. 7. 각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Ⅱ 제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제2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2. 7. 23.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9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향 및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문의견

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서 당내경선 관련 매수를 일반매수보다 가볍게 처벌할지 여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선거비용 보전 등 정치적인 문제들이 남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지역에서는 정당에 의한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될 만큼 정당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또한 양형기준이 관대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반매수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서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의 경우 예외 없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현재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일괄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조금 여지를 두어 완화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후보자비방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화할지 여부

후보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전과 등 개인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들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유포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된 면이 있고, 후보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위와 같은 개인기록 등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입후보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비정직성과 무책임성, 무도덕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기타 의견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방식도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제2차 자문위원 회의(2012. 7. 23.) |

III 제3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제3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3. 1. 7.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10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문의견

가.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세무사 등의 특가법 위반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변호사, 세무사 등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에서 명시적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지도층의 탈세문제에 예민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특가법이 이와 관련한 법정형을 상향시켜 놓았고, 위 범죄행위의 태양이 중개 · 알선 · 교사 정도이기 때문에 위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상습범에 대해 특별한 가중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하고, 세무사 등의 특가법 위반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는 논의의 영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유형에 상습범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의 소유형 분류 방안과 관련하여 과실범인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에 살인죄에 적용해야 할 '극단적인 인명경시의 경

우' 를 별도의 유형으로 두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별도의 유형을 만들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높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빈도가 그다지 높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조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해석하여 고의범인 경우에도 이를 포섭시키는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중대범죄 결합살인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 범죄가 방화살인인데 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극단적 인명경시' 사례의 경우 별도의 유형을 두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3차 자문위원 회의(2013. 1. 7.) |

제8장 전문위원 연구

I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1 경과

2012. 1. 16. 전문위원 제48차 전체회의에서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안은 2012. 1. 30. 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전문위원 연구계획은, 구체적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설정을 목표로, 위원회 회의 일정,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및 시행, 전문위원 조직 정비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양형자료조사결과 및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을 토대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 설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제1, 2기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연구계획안 내용

주제별 연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1) 연구 목적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을 위하여 수정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연구 내용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 35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회신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 다음,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양형기준의 해설을 수정하여 범죄유형 분류 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을 수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나. 교통, 폭력,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종합적 검토

(1) 연구 목적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중 교통, 폭력,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최종 의결을 위하여 양형기준안의 수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연구 내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및 제6차 공청회와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 43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회신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안 수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양형기준안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양형기준의 해설을 수정하여 범죄 유형 분류를 수정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2) 연구 내용

외국의 집행유예 관련 입법례 및 양형기준을 연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현행 집행유예 기준 적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유예 기준의 기본틀 또는 참작사유 평가원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라.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

(1) 연구 목적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한다.

(2) 연구 내용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을 분석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양형실무를 분석한 후, 과거 형량의 상향 여부 등을 결정하여 양형실

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을 한다. 다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특별/일반 및 가중/감경 양형인자를 선정하고, 대상범죄군별 집행유예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구체적 양형기준안을 작성 및 수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마.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1) 연구 목적

양형기준 수정 및 추가 양형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연구한다.

(2) 연구 내용

외국의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항목을 선정한 뒤,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평가에 적합한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바.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1) 연구 목적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양형인자 및 권고 형량범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2) 연구 내용

형사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설시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기재 방법을 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공방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며, 항소심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검토하여 적정한 양형인자 및 권고 형량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3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1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1월 ~ 3월	분담
2	교통, 폭력,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종합적 검토	1월 ~ 3월	분담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3	집행유예기준 개선 방안	4월 ~ 8월	1팀
4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	4월 ~ 8월	분담
5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9월 ~ 12월	2팀
6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9월 ~ 12월	2팀

| 전문위원 제59차 전체회의(2012. 10. 8.) |

II 전문위원 연구 성과

전문위원들은 확정된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팀별로 내부 회의를 거쳐 업무분장을 정한 후 연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가.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정순섭, 최형표, 조석영 전문위원

(2) 내용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심재철, 안효질, 최형표, 조석영, 함석천 전문위원

(2) 내용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강우예, 심재철, 조석영, 함석천 전문위원

(2) 내용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라.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조석영, 최형표 전문위원

(2) 내용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마.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조석영,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2) 내용

- 선거범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선거범죄 양형인자 설정 방안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선거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가 검토
-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가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바.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최형표, 주용완, 조석영, 이중교 전문위원

(2) 내용

- 조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설정 대상범죄 검토
- 조세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 검토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적정성 검토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 검토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사.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함석천, 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2) 내용

- 공갈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아.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최형표, 주용완, 조석영 전문위원

(2) 내용

- 방화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자.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 살인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수정 방안
  • 성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수정 방안
- 담당 : 최승원, 주용완, 조석영, 함석천, 김혜정 전문위원

(2) 내용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살인범죄 양형기준 개선 방안 검토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방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제9장 양형기준 운영점검 및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I 제1, 2, 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운영점검

1 개요

살인 등 제1기 양형기준 7개 범죄군(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약취 · 유인 등 제2기 양형기준 8개 범죄군(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과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2012.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선거범죄(2012. 9.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양형기준이 각 적용됨에 따라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을 통해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2 조사 현황

가. 월별 조사 현황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 범죄	수	50	66	71	60	57	53	54	78	67	59	55	29	699
	비율	7.2	9.4	10.2	8.6	8.2	7.6	7.7	11.2	9.6	8.4	7.9	4.1	100.0
뇌물 범죄	수	48	93	74	101	66	129	115	83	66	76	64	28	943
	비율	5.1	9.9	7.8	10.7	7.0	13.7	12.2	8.8	7.0	8.1	6.8	3.0	100.0
성범죄	수	404	468	434	477	441	519	510	701	508	580	490	287	5,819
	비율	6.9	8.0	7.5	8.2	7.6	8.9	8.8	12.0	8.7	10.0	8.4	4.9	100.0
강도 범죄	수	119	140	131	86	113	107	92	139	100	78	97	75	1,277
	비율	9.3	11.0	10.3	6.7	8.8	8.4	7.2	10.9	7.8	6.1	7.6	5.9	100.0
횡령·배임 범죄	수	397	489	474	469	413	470	474	634	391	518	495	202	5,426
	비율	7.3	9.0	8.7	8.6	7.6	8.7	8.7	11.7	7.2	9.5	9.1	3.7	100.0
위증 범죄	수	135	101	103	79	96	108	95	114	69	100	99	54	1,153
	비율	11.7	8.8	8.9	6.9	8.3	9.4	8.2	9.9	6.0	8.7	8.6	4.7	100.0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무고 범죄	수	94	140	126	123	106	94	131	154	112	117	133	70	1,400
	비율	6.7	10.0	9.0	8.8	7.6	6.7	9.4	11.0	8.0	8.4	9.5	5.0	100.0
전체	수	1,247	1,497	1,413	1,395	1,292	1,480	1,471	1,903	1,313	1,528	1,433	745	16,717
	비율	7.5	9.0	8.5	8.3	7.7	8.9	8.8	11.4	7.9	9.1	8.6	4.5	100.0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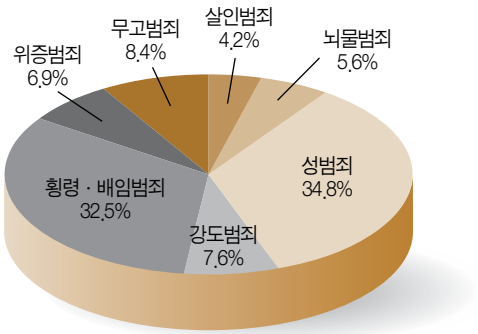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취·유인 범죄	수	7	8	5	5	20	2	4	24	8	8	10	2	103
	비율	6.8	7.8	4.9	4.9	19.4	1.9	3.9	23.3	7.8	7.8	9.7	1.9	100.0
사기 범죄	수	2,172	2,871	2,804	2,890	2,801	2,756	3,025	3,765	2,545	3,041	3,169	1,509	33,348
	비율	6.5	8.6	8.4	8.7	8.4	8.3	9.1	11.3	7.6	9.1	9.5	4.5	100.0
절도 범죄	수	1,105	1,262	1,212	1,236	1,094	1,182	1,281	1,476	963	1,099	1,028	743	13,681
	비율	8.1	9.2	8.9	9.0	8.0	8.6	9.4	10.8	7.0	8.0	7.5	5.4	100.0
공문서 범죄	수	114	207	113	109	102	106	91	121	108	105	135	61	1,372
	비율	8.3	15.1	8.2	7.9	7.4	7.7	6.6	8.8	7.9	7.7	9.8	4.4	100.0
사문서 범죄	수	125	183	136	177	155	128	154	230	115	159	212	46	1,820
	비율	6.9	10.1	7.5	9.7	8.5	7.0	8.5	12.6	6.3	8.7	11.6	2.5	100.0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수	503	655	525	577	485	490	528	651	440	422	359	224	5,859
	비율	8.6	11.2	9.0	9.8	8.3	8.4	9.0	11.1	7.5	7.2	6.1	3.8	100.0
식품·보건 범죄	수	270	333	287	239	194	270	252	288	211	232	254	240	3,070
	비율	8.8	10.8	9.3	7.8	6.3	8.8	8.2	9.4	6.9	7.6	8.3	7.8	100.0
마약 범죄	수	307	353	400	367	351	397	364	460	326	354	319	224	4,222
	비율	7.3	8.4	9.5	8.7	8.3	9.4	8.6	10.9	7.7	8.4	7.6	5.3	100.0
전체	수	4,603	5,872	5,482	5,600	5,202	5,331	5,699	7,015	4,716	5,420	5,486	3,049	63,475
	비율	7.3	9.3	8.6	8.8	8.2	8.4	9.0	11.1	7.4	8.5	8.6	4.8	100.0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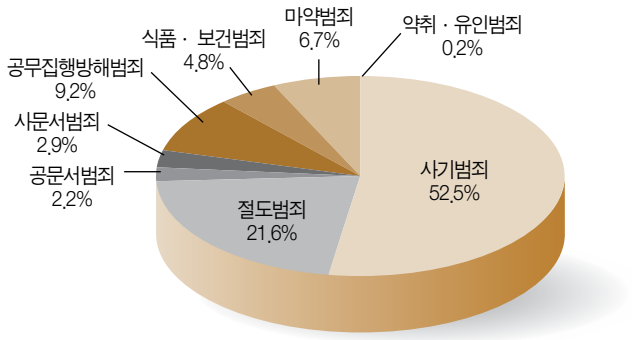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권·금융 범죄	수	2	3	8	6	13	9	31	14	8	94
	비율	2.1	3.2	8.5	6.4	13.8	9.6	33.0	14.9	8.5	100.0
지식재산 범죄	수	4	43	126	118	120	137	130	125	107	910
	비율	0.4	4.7	13.8	13.0	13.2	15.1	14.3	13.7	11.8	100.0
폭력범죄	수	142	680	1,986	2,422	3,576	2,425	2,670	2,712	1,791	18,404
	비율	0.8	3.7	10.8	13.2	19.4	13.2	14.5	14.7	9.7	100.0

범죄군 \ 월		2012년						2013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교통범죄	수	64	485	1,266	1,421	1,922	1,304	1,636	1,386	1,024	10,508
	비율	0.6	4.6	12.0	13.5	18.3	12.4	15.6	13.2	9.7	100.0
선거범죄	수	-	-	12	61	138	85	61	113	48	518
	비율	-	-	2.3	11.8	26.6	16.4	11.8	21.8	9.3	100.0
전체	수	212	1,211	3,398	4,028	5,769	3,960	4,528	4,350	2,978	30,434
	비율	0.7	4.0	11.2	13.2	19.0	13.0	14.9	14.3	9.8	100.0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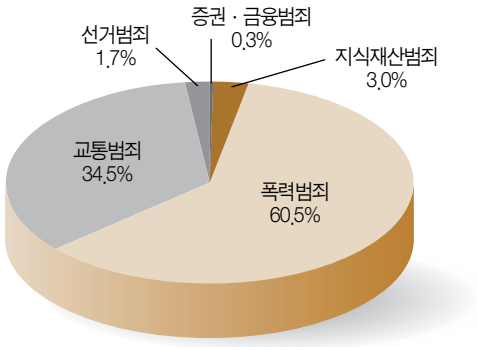

나. 세부 죄명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2. 4. 1. ~ 2013. 3. 31.)에 조사된 제1기, 2기, 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세부 죄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범죄	강간살인	0	0	0	0	0	0	0	0	1	0	0	0	1
	강도살인	0	2	1	2	0	0	0	1	1	0	3	0	10
	강도살인미수	0	1	0	0	0	3	0	0	3	0	0	0	7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	15	24	29	27	26	22	23	37	25	21	16	14	279
	살인미수	30	29	35	26	29	25	26	33	36	34	31	14	348
	살인미수교사	0	0	0	2	0	0	0	0	0	0	0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0	0	0	0	0	0	0	0	0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2	0	2	0	1	2	0	2	0	0	9
	성폭력범죄특례법 (강간등살인)미수	1	0	0	0	0	0	0	0	0	0	0	0	1
	존속살해	4	4	3	2	0	0	3	4	1	1	1	1	24
	존속살해미수	0	4	1	1	0	3	1	1	0	0	3	0	14
	특가법(보복범죄등)	0	0	0	0	0	0	0	0	0	1	0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0	2	0	0	0	0	0	0	0	0	0	0	2
	전체	50	66	71	60	57	53	54	78	67	59	55	29	699
뇌물범죄	뇌물공여	16	37	37	29	29	57	50	31	30	35	21	14	386
	뇌물공여교사	0	0	0	1	0	0	0	0	1	1	0	0	3
	뇌물수수	23	40	20	53	26	38	34	30	21	27	23	8	343
	뇌물요구	0	0	0	0	0	0	0	0	0	0	1	0	1
	부정처사후수뢰	0	1	1	0	1	0	2	4	0	1	1	0	11
	수뢰후부정처사	0	1	0	2	0	0	6	4	2	0	3	3	21
	제3자뇌물교부	0	0	0	3	1	3	2	1	0	0	1	0	11
	제3자뇌물취득	0	3	1	3	2	4	3	1	0	0	2	0	19
	특가법(뇌물)	9	11	15	10	7	27	18	12	12	12	12	3	148
	전체	48	93	74	101	66	129	115	83	66	76	64	28	943
성범죄	강간	11	21	15	16	10	19	10	18	15	16	18	10	179
	강간상해	9	17	13	13	14	13	8	14	6	15	8	7	137
	강간치사	0	0	0	0	0	0	0	0	0	1	0	0	1
	강간치상	16	20	25	18	22	23	31	26	13	28	18	9	249
	강도강간	1	3	2	0	4	1	1	1	0	3	1	1	18
	강제추행	90	107	104	117	123	155	142	169	124	146	79	86	1,442
	강제추행상해	1	4	2	3	3	4	1	5	4	0	4	3	34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강제추행치상	9	6	7	8	10	11	13	16	10	13	9	6	118
	미성년자간음	0	0	0	0	0	0	0	0	0	0	1	0	1
	미성년자의제강간	1	2	1	5	4	1	3	0	1	1	3	0	2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0	0	0	0	0	0	0	1	0	1	0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1	0	1	1	0	0	1	0	3	0	1	9
	미성년자추행	0	0	0	0	0	0	0	0	0	0	0	1	1
	상습강제추행	0	0	0	1	0	0	1	0	0	0	0	0	2
	상습준강제추행	0	0	0	0	0	0	1	0	0	0	0	0	1
	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4	6	5	4	4	5	3	7	11	8	2	60
	성폭력범죄 (13세미만위계등간음)	0	0	0	0	0	0	0	0	0	1	0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	0	0	1	0	0	1	2	0	1	2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0	0	0	0	1	0	2	4	2	0	0	0	9
	성폭력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1	5	1	0	0	1	0	3	3	1	0	15
	성폭력범죄 (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0	0	0	0	0	0	0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0	1	0	1	1	0	1	0	0	1	0	0	5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	0	0	3	0	2	1	2	5	7	4	2	29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	0	1	2	0	1	1	2	0	0	2	12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6	1	0	1	0	0	0	1	1	4	0	15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0	1	0	0	0	0	0	0	0	0	1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0	1	0	0	0	1	2	0	0	1	0	5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	10	2	2	1	1	1	5	0	4	4	2	35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7	6	2	3	2	3	5	2	9	7	7	2	55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0	2	0	0	0	1	0	0	0	0	0	0	3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0	0	0	0	2	0	0	4	0	0	0	0	6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32	22	18	17	11	15	14	11	9	17	7	7	180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5	9	13	20	16	20	23	17	21	23	9	176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0	0	0	0	0	1	0	1	2	1	0	5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0	0	1	3	4	3	2	5	2	20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0	0	0	0	1	3	3	0	1	0	8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1	0	0	2	0	1	3	5	3	15
	성폭력범죄특례법 (강간등상해)	12	10	8	11	12	11	12	27	10	6	7	6	132
	성폭력범죄특례법 (강간등치상)	5	6	12	8	12	11	9	10	12	6	6	3	100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간음)	0	0	0	0	0	0	0	1	0	0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강간)	0	1	5	2	1	5	6	3	3	12	4	1	43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0	3	1	1	3	3	4	5	9	4	7	3	43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6	13	4	6	10	16	0	10	3	9	2	86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0	0	0	2	1	0	2	5	0	10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1	0	0	0	0	1	2	1	1	6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위력등추행)	0	0	0	1	0	0	0	0	0	0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유사성행위)	0	0	0	0	0	0	0	2	0	0	6	0	8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준강간등)	0	0	0	0	0	0	0	8	0	2	3	3	16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0	0	0	0	0	0	0	0	0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 (절도강간등)	2	1	1	2	1	4	1	4	1	1	1	2	21
	성폭력범죄특례법 (주거침입강간등)	18	12	16	20	14	27	23	41	19	28	29	5	252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0	3	1	4	5	7	6	3	4	5	4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8	8	4	6	2	6	7	4	6	9	8	10	78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3	1	2	0	1	1	2	2	3	0	1	16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1	2	1	3	2	1	4	2	2	1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강간)	21	20	19	31	16	18	14	41	20	22	26	4	252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강도강간등)	9	8	4	4	8	9	4	8	5	8	3	1	71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강제추행)	8	2	5	0	0	2	7	8	2	3	5	1	43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준강간)	10	6	5	8	8	6	3	18	16	8	11	3	102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준강제추행)	0	1	0	0	0	0	3	0	0	0	3	0	7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0	0	1	0	0	0	0	0	0	0	0	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1	1	0	2	0	0	0	0	0	0	0	4
	성폭력처벌법 (장애인위계등간음)	0	2	0	3	4	0	0	0	0	0	0	0	9
	성폭력처벌법 (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0	0	2	0	0	0	0	0	0	2
	성폭력처벌법 (장애인유사성행위)	0	0	0	0	2	0	0	0	0	0	0	0	2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0	0	0	0	0	0	0	4	0	0	0	0	4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강간등)	82	106	92	84	50	74	53	91	52	44	52	25	805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0	1	6	13	14	15	27	37	30	49	39	19	250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위계등간음)	0	0	0	0	4	3	2	9	2	5	7	0	32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위계등추행)	0	0	0	1	2	1	2	6	6	4	5	1	28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유사성행위)	0	0	0	0	0	2	1	2	5	4	1	2	17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간음)	0	0	0	0	1	0	2	0	4	1	2	1	11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추행)	0	0	0	0	0	0	0	0	1	0	0	1	2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준강간등)	0	1	2	5	6	1	3	16	8	7	8	8	65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준강간등)교사	0	0	0	1	0	0	0	0	0	0	0	0	1
	준강간	8	7	7	12	13	8	9	11	11	10	9	10	115
	준강간상해	0	0	0	0	0	0	0	1	0	0	0	0	1
	준강간치상	1	0	2	2	0	1	1	3	4	2	1	0	17
	준강제추행	13	19	12	18	14	20	20	15	24	21	10	16	202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준강제추행상해	0	0	1	0	0	0	0	0	0	0	0	0	1
	준강제추행치상	1	0	0	0	2	0	0	0	1	0	0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0	0	0	0	0	0	0	0	1	0	0	0	1
	특가법(강도강간)	0	0	1	0	0	0	0	0	0	0	0	0	1
	전체	404	468	434	477	441	519	510	701	508	580	490	287	5,819
강도범죄	강도	4	13	15	6	14	11	3	7	6	13	13	6	111
	강도교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강도상해	41	46	54	25	41	40	40	58	42	22	34	21	464
	강도상해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강도치사	0	2	0	1	0	0	0	1	6	1	1	1	13
	강도치상	3	2	8	0	3	2	5	3	3	4	4	1	38
	준강도	3	6	2	2	6	6	4	3	7	3	8	3	53
	준특수강도	1	3	1	1	0	4	0	1	1	1	0	1	14
	특가법(강도)	5	2	0	0	1	1	0	4	0	2	0	0	15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2	0	1	0	0	0	1	2	1	2	0	13
	특수강도	58	64	51	50	48	43	40	60	32	31	35	42	554
	전체	119	140	131	86	113	107	92	139	100	78	97	75	1,277
횡령·배임범죄	배임	33	34	38	20	38	31	37	38	20	35	38	15	377
	배임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업무상배임	28	40	41	41	37	32	35	62	28	25	39	17	425
	업무상횡령	164	193	169	152	146	192	168	236	170	193	199	77	2,059
	특경가법(배임)	12	6	10	80	24	33	32	49	12	25	24	7	314
	특경가법(횡령)	19	66	40	25	40	35	38	47	27	55	38	10	440
	횡령	141	150	176	151	128	147	164	202	134	185	156	76	1,810
	전체	397	489	474	469	413	470	474	634	391	518	495	202	5,426
위증범죄	모해위증	2	0	1	1	2	1	1	4	1	1	3	1	18
	위증	118	87	85	68	89	93	90	93	60	89	84	45	1,001
	위증교사	15	14	17	10	5	14	4	17	8	10	12	8	134
	전체	135	101	103	79	96	108	95	114	69	100	99	54	1,153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무고범죄	무고	93	139	124	121	106	93	128	150	109	115	132	69	1,379
	무고교사	0	0	1	0	0	1	3	4	0	2	1	1	13
	특가법(무고)	1	1	1	2	0	0	0	0	2	0	0	0	7
	특가법(무고)교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전체	94	140	126	123	106	94	131	154	112	117	133	70	1,400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취·유인범죄	간음약취	0	1	0	0	0	0	0	0	0	1	1	0	3
	간음유인	0	0	0	0	0	0	0	0	0	0	1	1	2
	미성년자약취	4	0	0	2	0	0	0	2	3	0	0	0	11
	미성년자유인	0	0	1	3	1	0	1	0	0	0	3	0	9
	영리약취	0	1	0	0	0	0	0	0	1	1	0	0	3
	영리유인	1	0	0	0	0	0	0	1	0	0	0	0	2
	추행유인	0	0	0	0	0	0	0	0	0	1	0	0	1
	특가법(약취 · 유인)	2	1	0	0	1	0	1	7	1	1	4	0	18
	특가법(영리약취 · 유인등)	0	5	4	0	18	2	2	14	3	4	1	1	54
	전체	7	8	5	5	20	2	4	24	8	8	10	2	103
사기범죄	사기	2,092	2,743	2,687	2,775	2,676	2,620	2,877	3,596	2,433	2,903	3,023	1,458	31,883
	사기교사	0	0	0	0	0	0	2	0	0	0	0	0	2
	상습사기	12	11	12	4	8	13	17	14	17	13	15	4	14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0	0	0	1	0	0	0	0	0	0	0	1
	준사기	3	4	3	1	0	0	1	0	1	0	2	1	16
	컴퓨터등사용사기	24	33	26	55	36	51	32	58	23	39	43	20	440
	특경가법(사기)	41	80	76	55	80	72	96	97	71	86	86	26	866
	전체	2,172	2,871	2,804	2,890	2,801	2,756	3,025	3,765	2,545	3,041	3,169	1,509	33,348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2	2	2	2	0	1	0	1	4	0	4	0	18
	산림보호법위반	4	1	9	8	3	3	5	0	2	2	2	4	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3	22	17	15	14	15	14	25	13	8	14	16	186
	상습절도	0	2	1	1	0	0	0	0	0	0	0	0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47	45	41	35	40	44	52	45	26	48	43	17	4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0	0	0	0	0	0	1	1	0	0	0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5	2	8	5	5	9	4	7	4	5	5	6	65
	야간선박침입절도	0	0	0	0	0	0	0	1	0	0	0	0	1
	야간주거침입절도	32	43	23	26	21	41	33	51	28	40	24	22	384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절도	527	600	549	553	512	546	575	694	448	498	449	326	6,277
	절도교사	0	0	0	3	2	4	1	3	4	1	1	2	21
	특가법(산림)	2	1	3	3	0	2	1	4	2	0	11	0	29
	특가법(상습절도)	0	0	0	0	0	0	0	0	0	0	1	0	1
	특가법(절도)	189	201	209	221	173	194	197	237	150	218	165	121	2,275
	특수절도	284	343	350	364	324	322	396	407	281	279	307	229	3,886
	특수절도교사	0	0	0	0	0	1	2	0	1	0	1	0	5
	전체	1,105	1,262	1,212	1,236	1,094	1,182	1,281	1,476	963	1,099	1,028	743	13,681
공문서범죄	공도화변조	0	0	0	0	0	0	0	1	0	0	0	0	1
	공문서변조	2	9	5	8	7	9	3	5	7	8	7	2	72
	공문서변조교사	0	0	0	0	0	0	1	0	0	0	0	0	1
	공문서부정행사	39	32	26	20	17	27	24	22	10	19	22	16	27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0	0	0	0	1	0	1	0	1	0	0	3
	공문서위조	19	26	24	15	25	26	25	30	24	23	22	5	264
	공문서위조교사	0	1	0	0	0	0	0	0	0	0	2	0	3
	공용서류무효	0	0	0	0	0	0	0	0	0	0	1	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33	116	35	38	31	29	24	39	48	26	56	33	5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0	0	0	0	0	0	1	0	0	0	0	0	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전자기록등위작	1	0	1	0	1	0	3	6	0	1	1	0	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1	14	16	20	13	8	8	16	15	11	19	3	154
	변조공문서행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1	0	1	0	0	0	0	0	0	0	0	2
	위조공문서행사	4	6	1	2	1	3	0	1	0	3	1	0	22
	허위공문서작성	5	1	5	5	7	2	2	0	4	13	3	2	49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허위공문서행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전체	114	207	113	109	102	106	91	121	108	105	135	61	1,372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0	1	0	0	2	0	0	4	0	0	0	0	7
	사문서변조	12	7	7	10	7	13	5	16	6	14	11	2	110
	사문서부정행사	1	0	1	0	0	0	0	0	0	0	0	0	2
	사문서위조	100	163	120	157	134	98	136	195	100	136	178	37	1,554
	사문서위조교사	0	0	0	0	0	1	2	1	0	0	0	1	5
	사전자기록등변작	1	1	0	1	0	2	0	0	0	0	0	0	5
	사전자기록등위변작	0	2	0	0	0	0	0	0	0	0	0	0	2
	사전자기록등위작	3	0	0	0	4	1	1	1	3	0	1	1	15
	위조사문서행사	2	5	5	5	4	3	3	10	0	1	11	2	5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6	4	2	4	4	10	6	3	6	3	11	2	61
	허위진단서작성	0	0	1	0	0	0	1	0	0	5	0	1	8
	전체	125	183	136	177	155	128	154	230	115	159	212	46	1,820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401	477	411	439	347	359	372	460	307	302	279	176	4,330
	공무집행방해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공용건조물파괴	0	0	0	0	0	0	0	1	0	0	0	0	1
	공용물건무효	0	0	0	0	1	0	0	0	0	0	0	0	1
	공용물건손상	47	83	54	75	47	47	55	74	57	36	37	24	636
	공용물건손상교사	0	0	0	0	0	0	2	0	0	0	0	0	2
	공용서류무효	0	0	0	0	0	0	2	0	1	0	2	2	7
	공용서류손상	0	5	3	8	6	9	6	4	8	4	2	3	58
	공용서류은닉	0	0	0	1	0	0	0	1	0	0	0	0	2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위계공무집행방해	7	24	23	28	35	36	21	49	25	17	12	6	283
	특수공무집행방해	32	42	20	17	35	28	48	36	24	27	15	8	3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0	0	0	0	0	0	0	0	0	0	1	0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6	22	13	9	11	9	22	25	16	36	10	5	194
	특수공용건조물파괴	0	0	0	0	1	0	0	0	0	0	0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0	2	1	0	2	2	0	0	2	0	1	0	10
	전체	503	655	525	577	485	490	528	651	440	422	359	224	5,859
식품·보건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4	8	7	8	3	7	10	2	4	2	4	13	7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2	1	0	0	0	0	0	1	0	0	0	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45	60	55	48	43	51	46	51	35	35	30	43	5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30	23	22	18	11	20	20	15	12	31	21	17	2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	0	0	0	0	0	0	0	0	0	0	0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0	0	1	0	0	0	0	0	0	0	0	1
	식품위생법위반	111	133	105	79	43	113	100	126	82	96	101	85	1,174
	약사법위반	25	32	38	17	16	20	21	31	17	26	17	29	289
	의료법위반	48	65	55	50	72	48	52	60	57	41	75	40	663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0	0	0	1	0	1	0	0	0	0	0	0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5	8	2	13	1	7	3	3	2	1	5	12	62
	화장품법위반	1	2	2	4	5	3	0	0	1	0	1	1	20
	전체	270	333	287	239	194	270	252	288	211	232	254	240	3,070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1	41	47	31	33	49	42	44	26	36	40	22	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3	1	2	0	6	7	3	4	1	0	4	1	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20	278	304	298	278	296	277	367	260	287	257	172	3,294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31	32	46	38	34	45	42	45	38	29	16	29	425
	특가법(마약)	0	0	1	0	0	0	0	0	0	0	1	0	2
	특가법(향정)	2	1	0	0	0	0	0	0	1	2	1	0	7
	전체	307	353	400	367	351	397	364	460	326	354	319	224	4,222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0	2	2	2	3	4	11	3	1	28
	증권거래법위반	0	0	1	1	1	1	2	0	2	8
	특경가법(수재등)	0	0	1	1	1	0	3	2	1	9
	특경가법(알선수재)	2	0	4	2	6	4	11	5	3	37
	특경가법(증재등)	0	1	0	0	2	0	4	4	1	12
	전체	2	3	8	6	13	9	31	14	8	94
지식재산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0	1	0	3	0	2	3	2	0	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0	0	0	0	0	1	0	0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0	0	2	0	1	0	0	3	0	6
	상표법위반	0	20	84	69	66	88	56	57	51	491
	실용신안법위반	0	0	0	1	0	0	0	1	0	2
	저작권법위반	4	22	40	43	52	47	69	62	55	394
	특허법위반	0	0	0	2	1	0	1	0	1	5
	전체	4	43	126	118	120	137	130	125	107	910
폭행범죄	상해	74	324	825	1,072	1,402	943	1,101	1,069	748	7,558
	상해교사	0	0	0	0	0	0	1	0	0	1
	상해치사	0	0	5	5	8	8	13	7	7	53
	존속상해	0	6	4	8	12	7	10	7	7	6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존속상해치사	0	0	0	0	0	0	0	1	1	2
	존속중상해	0	1	0	0	1	0	0	0	0	2
	존속폭행	0	0	0	0	3	1	1	2	2	9
	존속폭행치상	0	0	0	0	1	0	0	0	0	1
	존속협박	0	1	0	2	1	0	0	0	0	4
	중상해	0	2	0	1	4	3	6	5	5	26
	집단흉기등폭행	0	1	0	0	0	0	0	0	0	1
	특가법(보복범죄등)	0	6	6	6	20	12	15	13	3	81
	특가법(보복상해등)	0	0	0	0	0	0	1	2	0	3
	특가법(보복폭행등)	0	0	0	0	0	0	0	1	0	1
	특가법(보복협박등)	0	0	0	0	0	0	0	3	2	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	22	39	48	89	54	57	68	40	419
	특수존속협박	0	0	1	0	0	0	0	0	0	1
	특수폭행	1	0	3	2	7	4	8	7	4	36
	특수폭행치상	0	0	0	0	0	0	0	0	1	1
	특수협박	0	4	5	5	10	4	4	8	6	46
	폭처법(공동상해)	24	100	234	245	398	266	274	302	240	2,083
	폭처법(공동상해)교사	0	0	0	0	0	0	0	1	0	1
	폭처법(공동존속상해)	0	0	0	0	0	2	0	0	0	2
	폭처법(공동폭행)	4	14	54	53	92	52	61	80	38	448
	폭처법(공동협박)	1	0	1	3	13	15	5	5	10	53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0	0	0	0	0	0	1	0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0	0	0	1	0	0	0	0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 · 흉기등상해)	0	0	0	0	1	1	6	3	0	11
	폭처법(단체등의집단 · 흉기등폭행)	0	0	0	0	0	0	2	0	0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 · 흉기등협박)	0	0	0	0	1	2	1	0	0	4
	폭처법(상습상해)	0	7	7	3	7	7	4	4	1	40
	폭처법(상습존속폭행)	0	1	2	0	0	0	0	1	0	4
	폭처법(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0	0	0	0	0	0	0	1	0	1
	폭처법(상습폭행)	1	2	6	8	9	4	5	3	2	40
	폭처법(상습협박)	0	1	3	1	2	0	2	0	1	10

범죄	세부죄명	2012년						2013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폭처법(야간 · 공동상해)	0	0	0	2	0	0	1	0	0	3
	폭처법(집단 · 흉기등상해)	0	6	325	337	559	347	392	425	191	2,582
	폭처법(집단 · 흉기등상해)교사	0	0	0	2	0	0	2	0	0	4
	폭처법(집단 · 흉기등존속상해)	0	0	3	0	6	3	2	7	2	23
	폭처법(집단 · 흉기등존속폭행)	0	0	0	1	2	2	0	0	0	5
	폭처법(집단 · 흉기등존속협박)	0	0	2	2	2	1	1	1	1	10
	폭처법(집단 · 흉기등폭행)	0	2	48	73	133	99	83	94	35	567
	폭처법(집단 · 흉기등협박)	0	1	98	116	192	120	138	124	59	848
	폭처법(흉기등상해)	0	11	0	0	0	0	0	0	0	11
	폭처법(흉기등협박)	0	8	0	0	0	0	0	0	0	8
	폭행	31	138	269	359	499	398	385	370	330	2,779
	폭행교사	0	0	0	0	1	0	2	0	0	3
	폭행치사	0	2	1	3	5	5	8	7	3	34
	폭행치상	0	3	4	10	18	12	15	22	11	95
	협박	4	17	41	54	78	53	63	69	41	420
	전체	142	680	1,986	2,422	3,576	2,425	2,670	2,712	1,791	18,404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9	274	712	757	1,057	708	927	808	581	5,863
	특가법(도주차량)	9	109	313	381	510	350	412	372	260	2,716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6	102	241	283	355	246	297	206	183	1,929
	전체	64	485	1,266	1,421	1,922	1,304	1,636	1,386	1,024	10,508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	-	12	61	138	85	61	113	48	518
	전체	-	-	12	61	138	85	61	113	48	518

다. 법원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2. 4. 1. ~ 2013. 3. 31.)에 조사된 제1기, 2기, 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법원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제1기 설정범죄							전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 · 배임 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서울중앙	수	28	111	528	59	603	79	105	1,513
	비율	1.9	7.3	34.9	3.9	39.9	5.2	6.9	100.0
서울동부	수	12	31	217	25	212	37	47	581
	비율	2.1	5.3	37.3	4.3	36.5	6.4	8.1	100.0
서울남부	수	36	44	226	54	224	44	78	706
	비율	5.1	6.2	32.0	7.6	31.7	6.2	11.0	100.0
서울북부	수	24	11	264	73	188	55	75	690
	비율	3.5	1.6	38.3	10.6	27.2	8.0	10.9	100.0
서울서부	수	16	56	189	46	156	32	48	543
	비율	2.9	10.3	34.8	8.5	28.7	5.9	8.8	100.0
의정부	수	42	22	323	74	373	46	110	990
	비율	4.2	2.2	32.6	7.5	37.7	4.6	11.1	100.0
인천	수	54	93	451	95	473	107	129	1,402
	비율	3.9	6.6	32.2	6.8	33.7	7.6	9.2	100.0
수원	수	96	85	767	176	821	145	165	2,255
	비율	4.3	3.8	34.0	7.8	36.4	6.4	7.3	100.0
춘천	수	24	43	200	26	148	41	47	529
	비율	4.5	8.1	37.8	4.9	28.0	7.8	8.9	100.0
대전	수	70	57	477	130	337	81	91	1,243
	비율	5.6	4.6	38.4	10.5	27.1	6.5	7.3	100.0
청주	수	24	35	155	32	119	30	50	445
	비율	5.4	7.9	34.8	7.2	26.7	6.7	11.2	100.0
대구	수	66	38	545	98	431	103	123	1,404
	비율	4.7	2.7	38.8	7.0	30.7	7.3	8.8	100.0
부산	수	47	64	355	132	381	71	89	1,139
	비율	4.1	5.6	31.2	11.6	33.5	6.2	7.8	100.0
울산	수	11	73	125	18	97	13	21	358
	비율	3.1	20.4	34.9	5.0	27.1	3.6	5.9	100.0
창원	수	51	33	322	91	239	89	75	900
	비율	5.7	3.7	35.8	10.1	26.6	9.9	8.3	100.0

		제1기 설정범죄							전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 · 배임 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광주	수	61	128	417	89	351	108	84	1,238
	비율	4.9	10.3	33.7	7.2	28.4	8.7	6.8	100.0
전주	수	29	14	190	44	219	57	51	604
	비율	4.8	2.3	31.5	7.3	36.3	9.4	8.4	100.0
제주	수	8	5	68	15	54	15	12	177
	비율	4.5	2.8	38.4	8.5	30.5	8.5	6.8	100.0
전체	수	699	943	5,819	1,277	5,426	1,153	1,400	16,717
	비율	4.2	5.6	34.8	7.6	32.5	6.9	8.4	100.0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제2기 설정범죄								전체
		약취·유인 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보건 범죄	마약범죄	
서울중앙	수	16	3,372	890	170	209	509	402	382	5,950
	비율	0.3	56.7	15.0	2.9	3.5	8.6	6.8	6.4	100.0
서울동부	수	10	1,282	492	43	53	209	102	97	2,288
	비율	0.4	56.0	21.5	1.9	2.3	9.1	4.5	4.2	100.0
서울남부	수	6	1,649	631	69	94	362	162	152	3,125
	비율	0.2	52.8	20.2	2.2	3.0	11.6	5.2	4.9	100.0
서울북부	수	2	1,398	431	37	56	255	112	147	2,438
	비율	0.1	57.3	17.7	1.5	2.3	10.5	4.6	6.0	100.0
서울서부	수	3	1,105	371	45	57	190	116	126	2,013
	비율	0.1	54.9	18.4	2.2	2.8	9.4	5.8	6.3	100.0
의정부	수	1	1,820	670	54	122	281	143	224	3,315
	비율	0.0	54.9	20.2	1.6	3.7	8.5	4.3	6.8	100.0
인천	수	2	2,840	1,103	151	171	585	217	575	5,644
	비율	0.0	50.3	19.5	2.7	3.0	10.4	3.8	10.2	100.0
수원	수	13	4,478	1,920	162	246	754	333	617	8,523
	비율	0.2	52.5	22.5	1.9	2.9	8.8	3.9	7.2	100.0

		제2기 설정범죄								전체
		약취·유인 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보건 범죄	마약범죄	
춘천	수	1	955	406	101	51	176	79	123	1,892
	비율	0.1	50.5	21.5	5.3	2.7	9.3	4.2	6.5	100.0
대전	수	10	2,036	1,041	107	122	363	245	166	4,090
	비율	0.2	49.8	25.5	2.6	3.0	8.9	6.0	4.1	100.0
청주	수	3	766	420	22	41	153	73	90	1,568
	비율	0.2	48.9	26.8	1.4	2.6	9.8	4.7	5.7	100.0
대구	수	6	2,903	1,454	104	161	540	229	323	5,720
	비율	0.1	50.8	25.4	1.8	2.8	9.4	4.0	5.6	100.0
부산	수	17	3,099	1,240	66	109	499	335	604	5,969
	비율	0.3	51.9	20.8	1.1	1.8	8.4	5.6	10.1	100.0
울산	수	2	621	289	18	27	119	37	82	1,195
	비율	0.2	52.0	24.2	1.5	2.3	10.0	3.1	6.9	100.0
창원	수	1	1,431	702	44	96	329	154	331	3,088
	비율	0.0	46.3	22.7	1.4	3.1	10.7	5.0	10.7	100.0
광주	수	9	2,230	942	124	122	301	168	80	3,976
	비율	0.2	56.1	23.7	3.1	3.1	7.6	4.2	2.0	100.0
전주	수	1	1,023	499	31	67	115	149	80	1,965
	비율	0.1	52.1	25.4	1.6	3.4	5.9	7.6	4.1	100.0
제주	수	0	340	180	24	16	119	14	23	716
	비율	0.0	47.5	25.1	3.4	2.2	16.6	2.0	3.2	100.0
전체	수	103	33,348	13,681	1,372	1,820	5,859	3,070	4,222	63,475
	비율	0.2	52.5	21.6	2.2	2.9	9.2	4.8	6.7	100.0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제3기 설정범죄					전체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서울중앙	수	18	120	999	501	22	1,660
	비율	1.1	7.2	60.2	30.2	1.3	100.0
서울동부	수	9	61	732	376	4	1,182
	비율	0.8	5.2	61.9	31.8	0.3	100.0
서울남부	수	4	55	1,086	447	13	1,605
	비율	0.2	3.4	67.7	27.9	0.8	100.0
서울북부	수	3	44	975	294	14	1,330
	비율	0.2	3.3	73.3	22.1	1.1	100.0
서울서부	수	6	34	477	156	2	675
	비율	0.9	5.0	70.7	23.1	0.3	100.0
의정부	수	2	66	893	539	9	1,509
	비율	0.1	4.4	59.2	35.7	0.6	100.0
인천	수	9	88	1,526	877	48	2,548
	비율	0.4	3.5	59.9	34.4	1.9	100.0
수원	수	15	115	2,451	1,413	67	4,061
	비율	0.4	2.8	60.4	34.8	1.6	100.0
춘천	수	4	2	582	453	11	1,052
	비율	0.4	0.2	55.3	43.1	1.0	100.0
대전	수	0	70	1,247	890	53	2,260
	비율	0.0	3.1	55.2	39.4	2.3	100.0
청주	수	0	13	459	348	44	864
	비율	0.0	1.5	53.1	40.3	5.1	100.0
대구	수	4	66	1,817	1,205	36	3,128
	비율	0.1	2.1	58.1	38.5	1.2	100.0
부산	수	9	95	1,654	581	42	2,381
	비율	0.4	4.0	69.5	24.4	1.8	100.0
울산	수	2	12	331	216	4	565
	비율	0.4	2.1	58.6	38.2	0.7	100.0

		제3기 설정범죄					전체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창원	수	5	29	957	542	41	1,574
	비율	0.3	1.8	60.8	34.4	2.6	100.0
광주	수	3	24	1,243	1,040	67	2,377
	비율	0.1	1.0	52.3	43.8	2.8	100.0
전주	수	0	16	677	412	36	1,141
	비율	0.0	1.4	59.3	36.1	3.2	100.0
제주	수	1	0	298	218	5	522
	비율	0.2	0.0	57.1	41.8	1.0	100.0
전체	수	94	910	18,404	10,508	518	30,434
	비율	0.3	3.0	60.5	34.5	1.7	100.0

Ⅱ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1 개요

운영지원단에 소속된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가 되는 양형자료를 조사 · 분석하기 위하여 지원단 본부 및 전국 13개 법원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양형자료분석관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형자료조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관 워크숍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전입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주제발표와 의견 교환,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의 효율성 · 통일성 ·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은 분석관들로 하여금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은 물론, 양형자료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분석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일　시 : 2012. 8. 31. ~ 9. 1.
- 장　소 : 양평 kobaco연수원

(2) 참석

- 운영지원단장
- 기획운영과 직원(과장 포함 5명)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양형자료조사과 직원(과장 포함 2명)
- 통계분석과 직원(과장 포함 3명)

(3) 주제 발표

주　제	발 표 자
사기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실무 검토	김근섭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 제기되는 의문점에 관한 실무 연구	이정행
통일된 운영점검 기준 마련을 위한 제안	최대원
운영점검상 절도죄에 대한 소고	안병갑
양형기준 운영점검과 통계분석의 효율성 증대 방안	선창민

3 양형자료분석관 정기 토론회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2012. 12. 6.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2. 12. 6.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대상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 토론 내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 통일방안
  - 양형기준 운영점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 통일 방안 모색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처리 방안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운영점검 방법 토론
- 교통범죄에서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 후 양형인자 및 상상적 경합범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2) 2013. 3. 28.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3. 3. 28.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 대상

- 양형자료분석관(11명)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 토론 내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 상상적 경합범 처리 방안
  - 양형기준 해설상의 상상적 경합범 처리 기준과 실무상 상상적 경합범 처리 기준에 대한 비교 및 토론
- 선거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실무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명 및 분리선고된 사건의 운영점검 방법, 양형인자 정의의 유의점, 양형인자 세부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사기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소고
  - 각 포괄일죄, 동종경합범, 조직적 사기 중 전화금융사기인 사기죄에서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의 적용방법 비교 및 토론

4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신규 분석관 및 직원들로 하여금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1. 14. ~ 1. 16.
-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215호 강의실 및 315호 멀티전산실

(2) 교육대상 및 교육지원

- 교육대상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 및 통계분석과 직원(11명)
- 교육지원 : 양형자료분석관 등(9명)
- 강사 : 사법지원심의관 및 운영지원단장, 양형자료분석관 등(8명)

(3) 교육내용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실습

제10장 양형자료 통계분석 지원

1 개요

운영지원단은 통계분석과에 통계전문 실무관을 배치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현황 분석 및 양형인자 추출작업 등을 통하여 구체적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다음과 같이 양형위원회에 제공하였다.

2 통계분석자료 지원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와 제1, 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중 양형기준 수정작업에 필요한 적용현황 분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하였다.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1]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2006. 5. 1. ~ 2011. 4. 30. 선고사건
  - 양형조사 대상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250조, 257조의 벌금형 사건 중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인 경우(사건리스트)

[2] 폭력범죄

- 공갈범죄
  - 2006. 5. 1. ~ 2011. 4. 30. 선고사건
  - 공갈범죄의 공갈액수(전체금액)에 따른 형량분포(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 공갈범죄의 피해금액별 사건리스트

■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

[1] 마약 및 식품 · 보건범죄 부준수 사건리스트

- 마약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부준수 사건리스트
  - 2011. 7. ~ 2012. 5.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기준 부준수 사건리스트
-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부준수 사건리스트
  - 2011. 7. ~ 2012. 5.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기준 부준수 사건리스트

■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

[1] 살인범죄

- 강간살인죄
  - 2009. 7. 1. 이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강간살인,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의 죄명에 해당하는 사건리스트
- 살인범죄 전체
  - 2009. 7. 1. ~ 2012. 6.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구분 및 유형에 따른 특별양형인자 빈도 및 그래프
  -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양형기준 준수 및 부준수(하한이탈 및 상한이탈 구분) 비율

[2]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2010. 7. 15. 이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 평균형량, 선고내역
  - 피고인의 연령별 선고내역